

2024회계연도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결산 예비심사보고서

법	무	부	소	관
법	제	처	소	관
감	사	원	소	관
고	위	공	직	자
범	죄	수	사	처
소	관			
헌	법	재	판	소
소	관			
대	법	원	소	관

2025. 9.

법 제 사 법 위 원 회

【 목 차 】

I. 소관 기관 회부 결산	1
II. 심사경과	2
III. 결산개요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3
IV. 대체토론 요지	31
V. 소위원회 심사보고 요지	31
VI. 심사결과	35
VII. 소수의견 요지	36
VIII. 찬반토론 요지	36
IX. 시정요구사항 및 부대의견	36

【 불 입 】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 결과	3
---	---

2024회계연도

결산예비심사보고서

2025. 9.
법제사법위원회

I. 소관 기관 회부 결산

1. 법무부 소관

-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
- 교도작업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수입 및 지출

2. 법제처 소관

-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

3. 감사원 소관

-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

4.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관

-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

5. 헌법재판소 소관

-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

6. 대법원 소관

-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
- 등기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 사법서비스진흥기금: 수입 및 지출

II. 심사경과

1. 제출일자 : 2025년 5월 30일

2. 회부일자 : 2025년 6월 2일

3. 상정 및 의결일자

◎ 제428회국회(임시회)

- 제1차 위원회(2025. 8. 26.) 상정 · 제안설명 · 검토보고 · 대체
토론 · 소위원회 회부

◎ 제429회국회(정기회)

- 제1차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2025. 9. 3.) 상정 · 의결
- 제2차 위원회(2025. 9. 4.) 상정 · 소위원회심사보고 · 대체토론 ·
의결

Ⅲ. 결산개요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정환철)

가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결산 개관

1 일반회계 (세출)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예산현액(A)	집행액(B)	집행률 (B/A)
① 법 무 부	4,139,309	4,306,684	4,255,881	98.8
② 법 제 처	45,418	45,418	44,290	97.5
③ 감 사 원	146,167	147,335	140,717	95.5
④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20,680	20,680	18,274	88.4
⑤ 헌 법 재 판 소	56,766	56,766	54,418	95.9
⑥ 대 법 원	1,864,618	1,881,816	1,858,601	98.8
계	6,272,958	6,458,699	6,372,181	98.7

2 특별회계 (세출)

(단위: 백만원, %)

구 분	회계명	예산액	예산현액(A)	집행액(B)	집행률 (B/A)
① 법 무 부	교도작업특별	113,046	121,218	118,297	97.6
② 대 법 원	등기특별	383,140	385,639	250,033	64.8
계		496,186	506,857	368,330	72.7

3 기 금 (지출)

(단위: 백만원, %)

구 분	기금명	계획액	계획현액(A)	지출액(B)	집행률 (B/A)
① 법 무 부	범죄피해자보호	137,054	137,054	142,412	103.9
② 대 법 원	사법서비스진흥	231,369	231,369	178,359	77.1
계		368,423	368,423	320,771	87.1

나 결산검토 총괄표

구 분	검토사업	세부 검토사항	페이지
① 법 무 부	56	72	p.5
② 법 제 처	9	15	p.15
③ 감 사 원	7	10	p.18
④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4	9	p.20
⑤ 헌 법 재 판 소	9	14	p.22
⑥ 대 법 원	24	32	p.25
계	109	152	-

다 기관별 검토보고 개관

1 법 무 부

사업별 구분	세부 검토사항	원본 페이지
<일반회계>		
1. 세입 총괄	토지대여료(52.2%), 기타관유물대여료(76.5%), 변상금(32.8%), 위약금(49.7%), 가산금(25.6%), 기타경상이전수입(75.7%) 등 항목의 수납률이 저조하고, 일부 항목은 수납실적 부진이 연례적인바, 개선대책 마련 필요	p.35
	과태료(105억 1,200만원), 변상금(24억 7,000만원), 가산금(13억 2,400만원), 징계부과금(7억 1,800만원), 토지대여료(9,800만원) 등 항목의 장기·과다 미수납액 관련 대책 마련 필요	p.37
2. 기타재산이자수입 (54-546)	대내·외 경제여건 등에 따른 금리 변동을 고려하지 않고 관행적으로 세입예산액을 편성하여, 실제 수납액과 과다한 격차가 매년 발생(2024년 수납률 334.2%)하는 실정이므로 시정 필요	p.40
3. 면허료 및 수수료 (수입대체경비, 65-651)	수입대체경비 예산액 산정 시 과거 추세를 적절하게 반영하지 않아 수납률이 2024년 110.7%, 2023년 157.4%, 2022년 92.5%, 2021년 69.4%로 매년 과다과소 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예산액과 징수결정액 간의 불일치 최소화 노력이 필요	p.44
4. 세출 총괄	기재부 집행지침과는 다르게 일반용역비(210-14)를 컨설팅이나 조사·연구 목적에 사용하는 사례들이 존재하므로, 모든 사업들에 대해 비목적합성 점검 및 필요시 관련 예산을 적합 비목으로 변경·재편성할 필요	p.50
	기본경비로 편성된 예산을 주요사업비 목적에 집행하거나, 주요사업비 예산을 기본경비로 편성·집행하는 사례들이 존재하는바, 기재부 편성지침에 맞게 해당 예산을 관련 주요사업비로 조정·편성할 필요	p.54

사업별 구분	세부 검토사항	원본 페이지
	연구용역을 연초부터 계획적으로 추진하지 않고 4/4분기나 연말에 추진하는 과업 사례들이 존재하고, 선금금(선금) 지급의 적절성과 지급시기 점검이 필요한 사례가 존재하는바, 연구용역이 보다 적절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집행관리에 철저할 필요	p.61
5. 행정효율성증진 및 능력개발(7032-300),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민원·정책 피드백(7032-301)	기관 전체 차원의 역량강화 등을 위해 중요성이 큰 사업임에도 집행률이 매년 70~80% 수준으로 부진한바, 집행부진이 연례적으로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 필요	p.69
6. 법무행정정보화 (정보화, 7034-500)	전산기기·장비 유지관리 용역 실시과정에서 서로 다른 프로그램에 편성된 예산을 법률상 이용절차 없이 하나의 계약에 혼용하여 집행한 문제가 있으므로 재발방지 필요	p.74
7. 법무정책 대국민 소통 강화(7037-300)	법무부 유튜브 조회수 및 구독자수가 전년대비 하락하고, 타 정부부처에 비해 게시물수와 조회수도 낮은 수준이므로 홍보업무 성과제고 등 운영 활성화 필요	p.78
8. 차세대 형사사법 정보시스템 구축 (정보화, 7038-301)	차세대 KICS 구축과 관련한 법무부 등의 추가과업 요구로 추가대금(133억 3,800만원) 지급이 필요하다는 계약업체(LG CNS) 측 분쟁조정 청구가 있는 상황인바, 분쟁의 합리적 해결 및 재발방지 필요	p.83
9. 기타 법무시설 개보수 및 확충(7039-300)	서울여자소년분류심사원 및 대구소년원 리모델링 사업 기획단계에서 내진성능평가 등을 고려한 사업설계가 이루어지지 않아, 2024년도 예산에 공사비 등을 일괄하여 편성하여 집행률이 각각 19%, 0%에 불과하므로, 건축물의 노후화 등을 고려한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 집행률을 제고할 필요	p.88
10. 법무부 기록관 운영 (7039-302)	사업이 연초부터 원활하게 시행되지 않고 있어 기록물 정리 및 이관 사업 전반을 면밀히 점검하여 향후 안정적으로 추진할 필요	p.95
11. 국가송무수행 및 공익 법무관 운영(1031-300)	공익법무관 수가 지속하여 감소되는 상황이나,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상 공익법무관의 목적인 법률구조·국가 송무업무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률구조를 담당하는 기관에 공익법무관 배치를 확대하는 등 배치 적정성 검토 필요	p.99

사업별 구분	세부 검토사항	원본 페이지
12. 국가배상금 지급 (1031-301)	법무부는 국가배상금 지급을 위해 2021년 이후 매년 이·전용을 하여 왔으며, 지난 2023년에도 예산 전용 등 부정확한 예산 편성을 지적한 바 있으나, 국가배상금 지급을 위한 2024년도 이·전용 등 규모는 오히려 2023년 대비 급증하였는바, 연례적 이·전용 개선 필요	p.104
13. 성장동력확충을 위한 기업법제선진화 (1033-304)	국제중재센터의 국제중재사건은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이며, 2024년의 경우 국제중재 사건접수 건수 48건 및 수수료 수입 약 5억원으로, 2024년 국제중재센터의 운영 보조금인 13억 4,900만원에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인바, 국제중재실적 제고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	p.110
14. 변호사제도 선진화 (1038-303)	법조윤리협의회는 식음료비, 연회비 등의 업무추진비에 해당하는 비용을 일반수용비(210-01)에서 집행하였는바, 집행지침에 부합하는 예산집행을 위해 법무부는 동 사업의 비목별 집행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하여 예산 집행지침에 부합하는 예산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	p.117
15. 인권교육(1133-300)	연간 인권감수성 훈련 임차료 지급 계약을 다수의 회차로 나누어 회차별로 특정 업체와 1인 수의계약으로 진행하는 계약 관행을 시정하여 연초에 경쟁계약으로 통합하여 발주하거나, 법무연수원을 보다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등으로 임차료 과다지급 문제를 개선 필요	p.122
16. 아동인권 증진 (1133-302)	아동인권 증진 교육에 소요되는 숙박비를 일반수용비로 편성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님에도 임차료(210-07)가 아닌 일반수용비(210-01)로 전액 편성하였고, 모든 회차의 교육을 호텔에서의 1박 2일 형태로 진행하여 숙박료를 과다하게 사용한 측면이 있으므로 시정 필요	p.130
	아동인권 증진 교육의 강사 구성 측면 및 교육비 지출액에서 지역 간 불균등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비대면 교육 방식을 활용하는 등으로 교육의 균등성을 강화하고 교육비의 지역간 편차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시정 필요	p.134

사업별 구분	세부 검토사항	원본 페이지
	아동인권 증진 교육을 타 부처와 공동으로 추진하면서, 경쟁계약의 대상인 단일 행사의 비용을 분할하여 법무부와 타부처가 각자의 예산을 집행하여 수익계약으로 체결하고, 해당 교육 관련 비용을 교육 시행 주체인 법무부 등이 전액 부담하고 있으므로, 계약방식 변경 및 교육대상자 소속기관에 대한 비용 분담 요구 등 개선 방안 강구 필요	p.138
17. 인권국 기본경비 (7011-263)	각 세부사업에 편성된 정책연구비를 우선 집행하고, 예측가능성이 부족하며 특별한 소요 없이 예비적 예산으로 편성되어 만성적으로 불용 처리될 수 있는 인권국기본경비 내의 정책연구비 예산은 편성 및 집행을 축소 필요	p.142
18. 이민정책개발 지원 (1231-300)	매년 반복적이고 정례화된 교육 사업 추진의 지연, 하반기에 집중된 교육일정 등 사업 수행의 적절성 점검 필요	p.148
19. 이민정책연구원 운영 (1231-302)	이민정책연구원이 연구개발 목적으로 집행한 민간경상보조금에서 목적이 불명확하거나 근거를 알 수 없는 사업비 지출이 존재하는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집행의 투명성 제고 노력 필요	p.152
20. 출입국사무소 시설운영 (1232-300)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연말에 이·전용으로 증액한 해당 예산을 10% 이상 불용한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전용된 예산의 불용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할 필요	p.157
21. 출입국정보시스템 운영 (정보화, 1232-305)	출입국정보시스템 세부사업비와 타 기본경비를 혼용 지출하고 있어 유의할 필요가 있고,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할 필요	p.162
22. 외국인보호관리 (1233-300)	최근 3년간 재정사업 자율평가에서 ‘미흡 2회’, ‘보통 1회’ 등급을 받아 기재부 지침에 따른 사업 폐지 논의가 진행되지 않도록 사업관리가 시급	p.168
23. 외국인사회통합지원 (1233-301)	귀화 민간면접관 45명 중 42명이 퇴직 공무원 및 퇴직 교사로 전체의 93%를 차지하고 있어, 귀화 면접심사의 공정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면접관 구성의 다양성 필요	p.175
	국적심의위원회 개최 증가로 예산집행률이 2023년 114.3%, 2024년 135.7%로 상승되고 있어, 증가 추세를 감안하여 관련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방안 강구 필요	p.178

사업별 구분	세부 검토사항	원본 페이지
24.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제 운영 (1233-304)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운영 사업의 일반수용비를 무관한 타 내역사업의 공공요금에 집행하고, 다른 세부사업의 목적으로 집행하고 있어, 유사 사례 점검 및 집행 투명성 제고 필요	p.181
25. 출입국관리사무소 운영인건비 (총액, 7002-100)	2021년부터 매년 평균 4.8억원 가량 이·전용을 통해 예산을 감액하고, 2024년에는 17.8억원을 감액하는 등 이·전용을 통한 여유 재원 활용 관례를 개선할 필요	p.186
	난민심사 전문임기제 인력 충원 및 운영이 원활하지 못하고, 난민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문임기제가 아닌 정식 직제에 따른 정원으로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p.190
26. 검찰청 시설운영 (1333-300), 검찰청 운영 기본경비 (7018-252)	2023년에 이어 2024년에도 시설장비유지비(210-09)를 다른 사업·항목 등으로 과다 전용·조정하였는바,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 및 예산편성 개선 필요	p.196
27. 과학수사 인프라 구축 (1333-302), 공공수사(1335-302)	‘통신자료 제공 통지 대행료’ 등 예산을 실제 소요액 이상으로 과다 증액하여, 해당 증액분을 사실상 그대로 다른 사업의 이·전용 등 재원으로 활용하였는바, 예산 증액 시 실제 소요액 추계의 정확성 제고 필요	p.201
28. 인권보호 등 검찰 업무지원(1333-306)	연구용역비(260) 집행 시 예산 편성·집행지침에 따른 비목 구분을 정확히 준수하지 않았고, ‘전문가 초청 세미나’ 등 일부 내역사업의 집행실적이 연례적으로 부진하며, 공사비(420-03) 및 자산취득비(430-01)를 다른 항목으로 과다 전용하였고, ‘재정사업자율평가’에서 ‘미흡’ 평가를 받기도 하였는바, 전반적 예산 편성·집행의 철저한 관리 필요	p.207
29. 형사부 등 수사지원 (1335-301), 마약수사 (1335-304), 사회공 정성 저해사범 수사 (1335-306) 등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비용’, ‘마약수사 관련 사례집 제작’ 등 일반수용비(210-01)를 과다 편성하여 그 집행 잔액을 소규모 물품구매 등 다른 목적으로 대부분 집행하였는바, 실제 소요에 맞게 편성하도록 주의 필요	p.213
30. 국민생활침해범죄수사 (1335-303) 등	2023년에 이어 2024년에도 필수경비인 공공요금(210-02) 예산을 부족하게 편성하여 다른 사업으로부터의 과다전용(41억 2,100만원)이 재차 발생하였는바,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 필요	p.222

사업별 구분	세부 검토사항	원본 페이지
31.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수사(1335-305)	◦ ‘사회적 약자대상 범죄관련 전문화교육’(8.5%), ‘피해자 심리·예술치료’(22.8%) 등 내역사업의 집행률이 연례적으로 저조한바, 실적부진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 필요	p.229
32. 공판활동지원 (1337-300)	◦ 형사상고심의위원회의 ‘상고포기’ 의견을 준수하지 않는 상고제기 사례가 최근 급증하였는바, 심의결과를 존중하여 상고제기를 더욱 신중하게 결정하도록 할 필요	p.233
33. 형사보상 (1337-302)	◦ 형사보상금 지급을 위한 다른 사업예산 이·전용 등 규모가 매년 급증하고 있는바(2024년 372억 2,500만원), 예산 적정 규모 편성 및 이·전용 최소화를 위한 제도 개선 검토 필요	p.238
34. 검찰청 운영 인건비 (총액, 7002-101)	◦ 검찰청 인건비(110) 예산을 매년 과다편성하여 그 잔액이 다른 사업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되거나 불용액이 과다발생하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고, 부정확한 비목 편성으로 세목조정이 매년 과다발생하고 있으므로, 예산편성 정확성 제고 필요	p.248
	◦ 검사 퇴직 증가 등에 따른 일선 검찰청 인력부족 악화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검사 인력을 대검찰청 등에 장기간 근무하게 하는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개선 필요	p.252
35. 검찰청 운영 기본경비 (총액, 7018-202)	◦ 검찰청의 실무수습 변호사 채용실적이 매년 부진하여 예산 이·전용 및 불용이 연례적으로 반복되고 있는바, 개선대책 마련 필요	p.258
36. 국제거래 및 국제통상 법률지원(1431-301)	◦ 국제법전문위원의 공백으로 인한 인건비 집행 부진은 2022년 이후 지속되고 있는바, 전문위원의 공백기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채용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내부전문가 양성 활성화 방안 마련 등 업무 공백기간에 대한 대안을 강구할 필요	p.263
37. 개발도상국 법제정비 지원(1431-302)	◦ 영문에디터의 공무원 인건비의 집행 부진은 2022년부터 3년간 지속되었는바, 업무의 연속성 측면을 고려하여 영문 에디터에 대한 처우개선 등을 통한 잦은 퇴직을 방지하고 내부전문가 양성 등 업무 공백기간의 대안을 마련할 필요	p.266

사업별 구분	세부 검토사항	원본 페이지
38. 국제투자분쟁 중재수행 및 대응(1431-303)	법무부는 “국제투자분쟁(ISDS) 제소에 따른 중재수행 및 대응사업(1431-303)”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중재비용 및 법률자문비용 지급을 위해 교도소 등 인건비에서 68억원을 국제법무국 기본경비로 전용한 후, 본 세부사업과 프로그램이 전혀 다른 ‘국제법무국 기본경비(7011-266)’의 예산을 이용절차 없이 본 사업(1431-303)의 예산과 함께 집행하였는바, 예산을 혼용하여 집행하는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필요	p.269
	국제투자분쟁 사건의 2024년 회계연도와 같은 긴급한 중재행정비용 등의 집행이 필요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예산 편성 시 그 소요액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함으로써, 실제 필요한 항목에 대하여 적정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	p.274
39. 교도소 행정지원 (1531-300)	교도소 이전 개정식 등 전문성이 필요한 행사를 용역 계약 등을 통해 대행시킬 경우, 예산 소요를 사전에 예측하여 “일반수용비(210-01)”가 아닌 “일반용역비(210-14)” 비목으로 예산을 편성·집행할 필요	p.276
40. 교정시설 수용관리 및 공공요금 (1532-300)	교정시설 수용인원 및 외부 의료기관 이용 증가에 따른 예산 부족으로 타 사업으로부터 이·전용(309억 9,100만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교정시설 내 진료 활성화를 통하여 외부 의료비 등의 초과집행을 줄이기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	p.281
41. 교정교화(1532-301)	교정기관별 심리치료팀 구성인원 및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기관이 다수 존재하므로, 상담전담직원 등을 충원·배치하고, 외부전문가 상담을 활성화하는 등 「심리치료 업무지침」에 부합하는 교정·교화제도 실시방안을 강구할 필요	p.287
42. 교도소 운영 인건비 (총액, 7002-103)	매년 200~400억원 대의 예산이 교정직 공무원의 인건비에 사용되지 못하고 타 사업으로 이·전용 및 불용되고 있으므로, 미집행액의 과도한 이·전용을 지양하는 한편, 부족한 교정직 공무원 충원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필요	p.294

사업별 구분	세부 검토사항	원본 페이지
43. 소년원생수용 (1632-300)	◦ 소년원 신규 수용인원과 출원 후 재입원 비율이 매년 증가((‘21)4.7%→(‘22)8.2%→(‘23)10.4%))하고 있으므로, 청소년자립지원기관에 대한 인지도 제고 등 소년원 출원 후의 사회정착률 증가 방안을 강구할 필요	p.299
	◦ 전국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의 과밀수용(평균 수용률 109%)을 해결하기 위한 수용정원 증원계획을 신속히 수립·시행하는 한편, 다양한 수용완화방안 등 중·단기적 방안도 함께 검토할 필요	p.306
	◦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11개 기관 중 10개 기관의 의무관 정원이 미달한 상황이고, 제주소년원의 경우 시간제 의무관 혼자 1일 4시간씩 근무하고 있는 실정으로(2025.5.기준), 제주소년원 의무관의 조속한 충원대책을 시행하고, 의무관 처우개선 등 인력충원을 위한 종합적 대책 마련을 충실히 검토할 필요	p.312
44. 청소년 비행예방 (1632-301)	◦ 청소년비행예방센터 강사 고용의 안정성 유지를 통해 비행예방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관련 예산의 집행률을 제고할 필요가 있으며, 장기적으로 자체 청사 확충방안을 모색할 필요	p.315
45. 치료감호자 수용관리 (1634-300)	◦ 국립법무병원 정신과 의사의 처우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충원율을 높이고, 각종 치료 및 훈련 내실화를 위하여 임상심리사·사회복지사 등 기타 의료인력의 충원 노력을 경주할 필요	p.323
46. 보호관찰활동 (1635-300)	◦ 2024년 치료명령 대상자 심리치료비 예산 1억 9,120만 원을 164.7% 초과한 3억 1,500만원이 집행되었으므로, 치료명령 대상자 중 위기상황자 수의 합리적 추계를 바탕으로 적정규모의 예산을 사전에 편성하고 안정적으로 추진·집행할 필요	p.328
47. 범질서 준수 및 법교육 활동(1636-304)	◦ 학생자치법 교육 운영 대금은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를 외부기관에 대행시키는 비용에 해당하므로, 사업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일반수용비(210-01)”가 아닌 “일반용역비(210-14)” 비목으로 예산을 편성·집행할 필요	p.333
48. 연수원 시설관리 및 운영(5131-300)	◦ 최근 3년간 중도 퇴직한 공무원이 전체 25% 수준으로 다소 높고, 특히 조리 분야 공무원이 전체 퇴직자의 65%를 차지하고 있어 근본적인 퇴직원인 파악·확인과 대책 수립이 필요하고, 연수원 공무원의 정원대비 초과 운영이 적절한 것인지 검토 필요	p.336

사업별 구분	세부 검토사항	원본 페이지
49. 법무·검찰 공무원 등 교육운영 및 개선 (5131-301)	성과 목표치를 실적에 맞게 현행화하여 도전적으로 설정하는 등 지표를 개선할 필요가 있고, 교육 평가의 핵심 성과에 대한 만족도가 저조한 과정들이 확인되고 있어 평가 체계를 재검점할 필요	p.341
50. 법무연수원 수입대체 경비(5131-311)	2024년 집행률이 85%에 머무르고 있어, 추가적인 집행을 제고 여지가 있는지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수입대체경비 도입 취지에 맞게 운영할 필요	p.347
51. 법무연수원 기본경비 (총액, 7018-204)	포상금 용도에 맞는 정기적 격려에 기타운영비를 사용하는 사례가 존재하고 있어 전수 조사 및 시정을 통해 포상금 예산으로 변경편성 필요	p.352
<교도작업특별회계>		
52. 전년도 세계잉여금 (89-893)	2020년~2023년에 매년 기계적으로 98억 4,000만원을 전년도 세계잉여금 예산으로 편성함으로써 실제보다 과소·과다 계상되어 예산에 반영된 문제가 있으므로, 예산 편성 시 연도별 수납실적 및 지출액을 면밀히 분석하여 세입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할 필요	p.357
53. 기타재산이자수입 (54-546), 설비부담금(59-595)	기타재산이자수입(54-546)은 교도작업특별회계 관리통장의 이자 수입 200만원이며, 설비부담금(59-595)은 교정기관 위탁작업장 화재보험료로, 지난 4년간 지속적으로 수납실적이 있었고 앞으로도 세입이 예상되므로, 이를 세입예산에 계상할 필요	p.361
54. 시설보완(1535-302)	2024년의 경우 교도작업부과 적격자 20,476명(93.8%)가 정역에 복무하고 1,351명(6.2%)은 정역에 복무하지 못하였으므로, 교도작업 정역집행률 제고를 위하여 작업장 신축 등 실효적인 개선방안 마련 필요	p.363
<범죄피해자보호기금>		
55. 기타경상이전수입 (59-596)	세입예산액을 편성시점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의 수납액 평균에 따라 기계적으로 편성하여, 편성액과 실제 수납액 간 격차가 지속 발생하고 목표 세입예산액을 관행적·보수적으로 추계함으로써 재정건전성 제고를 모색할 유인이 줄어들 수 있으므로 편성 관행 시정 필요	p.366

사업별 구분	세부 검토사항	원본 페이지
	◦ 장기 연체된 미납 보조금 반납이 미흡한 실정이므로, 미수납금의 반환관리, 사후정산 시스템의 개선, 장기간 연체된 보조금 집행잔액의 적기 회수 등을 통해 기금의 재정건전성을 강화할 필요	p.370
56. 범죄피해자 치료 및 자립지원(1135-300)	◦ 원스톱솔루션 센터 관련 업무 중 중기계획 수립 및 추가 개소 준비 등은 1년 기한의 자율기구를 신설하여 담당하도록 하였는데, 자율기구의 존속기간이 만료되어 업무 연속성 저하 및 업무부담 가중으로 인한 추가 개소 계획 적기 추진의 차질이 우려되므로, 예산 및 인력 수급 계획을 보다 면밀히 수립하고 관련 기관과 협의 철저 필요	p.373
	◦ 원스톱솔루션 센터가 기존의 유사한 시설과 서비스의 실질적 측면에서의 차별점이 불분명하고, 양적 측면에서 사업 실적이 부진하며, 센터 운영의 성과와 관계된 통계를 집계·분석하고 있지 않아 체계적인 성과관리가 어렵고, 유관기관 간 연계에도 미흡한 측면이 있으므로 사업 운영체계를 전반적으로 개선할 필요	p.380
	◦ 원스톱솔루션센터의 자율기구가 전체 예산집행액의 대부분(84%)을 서울센터 공사비에 사용하였는데 이는 주된 업무인 유관기관 협력 및 중기계획 수립 등과 실질적으로 관계된 예산 집행액에 비하여 과도한 측면이 있으므로, 향후 원스톱솔루션센터 운영 과정에서 취지에 부합하는 예산 집행으로 사업관리 철저 필요	p.385
	◦ 원스톱솔루션 지원 매뉴얼 및 원스톱솔루션 센터의 운영규정 등 센터운영에 관한 기준 및 매뉴얼을 공개하지 아니하고 있는데, 유사한 서비스제공기관인 해바라기센터에서는 이를 공개하여 범죄피해자의 알 권리를 보호하고 서비스제공의 신뢰성을 담보하는바 이를 참고하여 정보공개 방안 등 적극 검토 필요	p.386
	◦ 범죄피해 트라우마 통합지원기관인 스마일센터 운영 민간경상보조의 경우 최근 3년간 실집행률이 저조하였는데, 이는 센터 내 임상심리전문가 등의 급여가 타 기관 대비 낮아 단기간 내 퇴사하는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인바 처우 개선 및 관련 예산의 추가 확보를 위한 방안 모색 필요	p.387

사업별 구분	세부 검토사항	보고서 페이지
<일반회계>		
1. 인건비(총액인건비 대상, 1001-100)	신규공무원 임용 전 실무수습 근무에 따라 인건비 중 기타직보수(110-02목)의 부족이 발생하여 보수(110-01목)에서 4,700만원을 자체 전용하였는데, 유사한 사유로 인한 전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 2024년 중 신규채용한 직원들의 인원수가 이미 2024년 예산안 편성 전에 인사혁신처와의 협의 하에 정해져있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향후 이와 같은 연례적 자체전용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	p.15
	법령정보제공, 세계법제정보서비스 등 총액인건비 비대상사업에서 상용임금, 일용임금 등 인건비성 경비 9,150만원을 총액인건비 대상인 인건비 사업의 보수(110-01)로 전용하여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과 「2024년도 총액인건비제 세부 운영지침」을 위반하였으므로 향후 이와 같은 이·전용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	p.20
2. 기관운영기본경비 (1011-250)	법제처는 국내과건 교육훈련자의 국외 현장학습 진행을 위해 기관운영기본경비 중 일반수용비(210-01목)에서 국외교육여비(220-03목)로 1,393만원을 전용하였는데, 향후 집행 내용에 부합하는 비목으로 편성하여 불필요한 예산 변경을 자제할 필요	p.26
	법제처의 법령해석을 소관 부처가 수용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함에도 별도의 안내가 없어 행정기관과 민원인간에 불필요한 갈등이나 혼선이 야기될 수 있으므로, 부처가 수용하지 않은 법령해석사례에 대해서는 법령소관 부처와 적극적인 협의 등을 통해 민원인을 포함한 일반 국민이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필요	p.28
3. 법령정보제공 (1031-300)	4분기에 집중된 전문가 자문료 예산의 집행시기를 적정하게 분산하고, 자문료 지급의 근거 법규를 마련할 필요	p.35

사업별 구분	세부 검토사항	보고서 페이지
	한눈보기 시각 콘텐츠 이용자의 오해가 없도록 기준 시점을 정확히 기재하거나 핵심적 내용을 담은 미시행 법률에 대한 설명을 두는 등 현행화와 관련한 개선을 할 필요	p.42
	청소년법제관을 대상으로 한 독서대회 도서의 저자를 다양화할 필요	p.46
4.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서비스 (1031-302)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서비스 운영에 있어 여전히 현행성 있는 정보 전달이 미흡하고, 2023회계연도 결산 시정조치사항 보고와 달리 일부 콘텐츠에서는 시행 예정 법령에 대한 안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법령정보의 현행성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과 개정 후 시행 전 법령에 대한 사전 안내 준비를 통해 콘텐츠의 신뢰성 확보 방안을 마련할 필요	p.50
	법제처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서비스사업에서 연례적으로 실시하는 세미나가 법령의 개선방안, 향후의 입법론에 대한 내용을 위주로 하여 현행의 법령을 알기 쉬운 방식으로 국민에게 제공하는 사업 목적과 무관하므로 사업 취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개선할 필요	p.54
5. 법령심사지원 (1032-300)	법령입법지원시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실시하고 있는데, 자문이 하반기에 집중되고 있으므로 연중 자문료 집행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한편, 전문분야에 맞는 자문위원에게 자문을 구할 필요	p.58
	법제처가 법령입법지원을 한 후 입법예고안에 반영되는 비율이 점점 감소하고 있으므로 사업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입법지원과 법령안의 법제처 심사 등 정부입법 사전절차의 직접적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원스톱 법제지원 제도 등을 활성화할 필요	p.61
6. 법 제 정비 (1032-301)	알기쉬운 법제구축 내역사업에서 수행하고 있는 알기쉬운 법령 문장 만들기 연구용역은, 용역 결과가 최종 문장 정비안으로 선정되는 비중이 상당히 낮고 실제 법령 정비 실적도 미흡하며, 정비안 자체의 내용도 경미한 수정에 불과하여 개정 필요성이 낮은 경우가 있으므로 예산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문장정비 사업의 실효성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	p.66

사업별 구분	세부 검토사항	보고서 페이지
7. 행정법제 혁신 (1032-302)	◦ 행정법제 혁신 사업의 정책연구비로 3개 과제에 대한 입법영향분석을 실시하였는데 분석 결과 일부 개선과제가 사업 목적과 달리 법제도 개선이 아닌 행정적 개선사항에 그치는 점, 타 연구용역에 비해 평균 용역 금액이 훨씬 높음에도 개선과제 도출이 미흡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입법영향분석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	p.74
8. 법제업무정보화추진 (정보화, 1033-500)	◦ 정부기관의 검색서비스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공신력에 대한 기대를 가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생성형 언어모델 기반의 법령정보서비스 구축에 있어 AI 환각 현상을 줄이고, 해당 현상의 발생 시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	p.80
9. 외국법제기관교류 (1034-301)	◦ 현재 운영 중인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와 설립 준비 중인 ‘아시아 법제기구 협의체’의 운영계획이 그 목적에 있어 중복의 소지가 있고, 참가 국가가 서로 다르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와 아시아 법제기구 협의체를 연계하는 등 양 사업의 목적과 기능이 중복되지 않도록 효율적으로 운영할 필요	p.85

3 감 사 원

사업별 구분	세부 검토사항	원본 페이지
<일반회계>		
1. 기본경비(1111-251) - 상용임금·일용임금	예산상 상용임금과 일용임금을 구분하고 있는 것은 국가가 공공부문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취지임을 감안하여 상용임금을 일용임금으로 조정하여 집행하는 것은 지양할 필요	p.10
2. 기본경비(1111-251) - 재무결산	2024회계연도 감사원 결산보고서상 재무제표의 재정상태 분석 중 유동자산과 기타비유동자산 항목에 오류가 발생하였으므로,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	p.16
3. 감사활동경비 (1131-303)	2024년에 일반연구비로 수행한 총 14건의 연구과제 전부를 비공개하였는바, 각 과제별 검토를 통해 용역결과를 적극적으로 공개할 필요	p.20
4. 적극행정지원 (1131-304)	발간물 관련 연말 집중계약과 사고이월 방지를 위해 사업 추진 일정을 체계적으로 계획·관리하고, 수의계약 의존도를 낮추고 계약 방식의 다양화를 검토할 필요	p.23
	2024년 사전컨설팅 처리기한 내 처리율은 33.3%로, 처리기간이 지나치게 긴 경우 적시성이 떨어져 제도의 실효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으므로, 절차간소화 등 처리기간 단축방안을 모색할 필요	p.27
5. 노후시설 개보수 및 업무시설 정비 (1133-309)	내역사업 중 실집행률이 60% 수준으로 저조하게 나타난 시설공사가 있었는데, 향후 시설계획 수립시 면밀한 검토 필요	p.33
	실집행률 저조로 인해 미집행된 공사비를 다른 용도로 전용·조정하여 집행한 것은, 국회의 예산심의권 및 재정통제권을 형해화할 우려가 있으므로, 최소화할 필요	p.36
6. 전산운영경비 (정보화, 1134-309)	향후 다년도 사업의 추진 일정에 대해 충분한 사전 검토와 관련 부처와의 사전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후속 일정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체계적인 사업 관리를 할 필요	p.38

사업별 구분	세부 검토사항	원본 페이지
	필수 보안 소프트웨어 구매를 불확실한 낙찰차액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사업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관련 예산에 대한 계획과 편성 필요	p.43
7. 국제교류협력강화 (1135-322)	감사원의 예산요구안에는 포함되었으나 기획재정부의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제외되어, 국회의 소관 상임위 및 예결위의 예산 심사 과정에서도 논의된 바 없는 사업에 예산함에 따라 당초 예산에 편성된 사업비가 부족하여지자 예산을 전용하여 집행한 것은, 예산의 목적외 사용 금지원칙 및 전용 제한의 취지에 반하는 부적절한 집행으로 재발 방지를 위해 주의할 필요	p.45

4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업별 구분	세부 검토사항	원본 페이지
<일반회계>		
1. 공수처 업무 안정성을 위한 인력확보방안 마련 필요(총괄)	행정직원 부족으로 다수의 파견공무원이 행정업무를 처리하는 등 행정직원 인력이 부족하므로 행정직원 정원 관련 법률 개정 추진, 행정시스템 효율화 등 인력 부족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 필요	p.10
	공수처 검사 및 수사관의 퇴직률이 높아 수사 효율성 및 조직 운영에 대한 우려가 있으므로 신분불안 해소책을 마련함과 동시에 채용기준 및 절차를 면밀히 점검하여 공정한 인사시스템을 확립하는 등 검사 및 수사관의 퇴직률 감소 필요	p.16
2. 수사 및 공소 관련 위원회 운영 성과 제고 필요 등(총괄)	공수처 소속 위원회의 개최실적이 저조(예산집행률 14.5%)하므로, 위원회 예산 개최횟수의 합리적 산정 및 관계 기관 협의 등을 통해 영장심의위원회 개최실적 제고 필요	p.20
	공보심의위원회 회의를 다른 위원회와 달리 모두 서면 심사를 통한 원격심사로 개최하였는데, 원격회의는 공보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등 긴급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원격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규정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공보 준칙」 제 23조제2항을 고려, 가급적 원격회의 개최를 지양할 필요	p.28
3. 수사지원 및 수사일반 (1032-301)	수사지원 및 수사일반 사업의 집행률은 예산편성 대비 80% 미만의 집행률이 지속되고 있고, 포상금 및 기타 보전금의 집행률은 0%, 8%로 현저히 집행률이 저조한 상황이므로, 포상금 지급 규정에 대한 개정 및 포상금 규모·종류의 현실화 방안 등을 고려하여 집행률을 제고할 필요	p.31
	고위공직자범죄는 내부고발자로부터 수사의 단서를 얻어야 할 필요성이 큼에도 내부고발 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바, 홍보·교육 등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한 내부고발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 적극 강구 필요	p.35

사업별 구분	세부 검토사항	원본 페이지
4. 공수처 운영 기본경비 (비총액, 7011-250)	공수처는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못하여 매년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는데, 정부기관이 법률상 의무를 지키지 못하여 지속적으로 부담금을 납부하는 상황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추후 행정직원의 신규 채용 소요 발생 시 장애인 의무고용률 준수를 위해 노력할 필요	p.40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매년 납부하고 있음에도, 회계연도가 시작된지 얼마 되지 않은 1. 26. 일반수용비에서 공공요금 및 제세로 세목변경을 하고 있는바, 예산편성 시 적정 규모를 파악하여 세목변경을 최소화할 필요	p.43
	일반연구비 및 정책연구비의 집행률은 각 32%, 29.5%로 저조한 상황이나 정책연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정책연구심의회는 16회의 회의를 모두 서면심사 형태로 개최하였는바, 연도 말에 긴급한 연구 선정 시도 등의 집행을 지양하고, 긴급한 사유가 없는 한 정책연구심의회 서면심사를 통한 개최를 지양할 필요	p.44

5

헌 법 재 판 소

사업별 구분	세부 검토사항	원본 페이지
<일반회계>		
1. 인건비(1001-150)	- 인건비 사업의 불용률(4.0%)은 정부 전체 일반회계 인건비 불용률(1.2%)과 비교하여 과도하고, 2023년도 불용률(2.7%)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바, 인력에 대한 충원계획을 보다 면밀히 수립하고 실제 소요인력이 반영된 적절한 예산을 편성할 필요 - 명예퇴직 시 특별승진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타 기관과 달리 특별한 공적여부에 대한 심사규정 및 명예퇴직 수당이 환수되는 경우 특별승진임용을 취소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데,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을 개정하여 명예퇴직 시 특별승진을 그 제도의 취지에 맞게 운용할 필요	p.16 p.21
2. 본부기본경비(1011-250)	직책수행경비에서 지속적으로 불용액이 발생하는 것은 전년도에 준하는 관례적 예산편성으로 면밀한 소요 파악이 이루어지지 않은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예산안 편성 또는 심의 단계에서 실소요를 정밀히 파악하여 적정한 예산을 편성하고 불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	p.27
3. 국선대리인보수 등 (1031-300)	참고인 연구비 등 사업은 지속적으로 불용액이 발생하였고, 참고인 지정 시 특정 분야로의 쏠림 현상과 복수의 전문가 지정 비중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보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재판 참고인으로 활용하고, 전문가마다 학문적 배경이나 실무 경험, 해석 방식이 다른 점 등을 고려하여 복수의 전문가를 참고인으로 지정하는 등 제도가 실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	p.31
4. 재판활동운영지원 (1031-301)	헌법재판소는 심판사건 처리기간에 있어 유의미한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 요인을 분석하여 헌법소원 등 심판사건의 처리기간 단축을 위한 실효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한시적으로 운영한 장기미제부 상설화, 사건의 경중, 난이도, 사회적 파급력 등을 고려한 사건의 선별 배정 체계 마련 등 다양한 제도적 개선 방안을 모색할 필요	p.37

사업별 구분	세부 검토사항	원본 페이지
	◦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운영(1001) 프로그램의 성과지표를 ‘심판사건처리율(처리사건/접수사건×100)로 설정하여 그 성과의 달성도를 측정하고 있는데, 2025년도 성과계획서 상 목표치를 2024년도의 실적에 비해 하향된 수치를 설정한바 목표치를 도전적으로 설정하고 이를 도달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으며, 하나의 성과지표로 프로그램의 성과를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는지 고민할 필요	p.46
5. 본부운영지원 (1032-302)	◦ 어린이 홈페이지 운영 사업의 홈페이지 방문 현황을 살펴보면, 이벤트를 개최한 달과 그 외의 달의 방문건수에 현격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는바, 향후 특정 이벤트 기간 외에도 사업대상자의 지속적이고 자발적인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사업운영 방식을 강구할 필요	p.52
	◦ 정책연구용역 계약 현황을 살펴보면, 특정 학회와의 수의계약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바, 향후 정책연구용역을 실시함에 있어 적극적인 홍보 등을 통하여 수의계약 비중을 낮춰 경쟁입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정책연구용역 사업 수행기관 선정을 다변화하여 업무 수행 과정에 다양한 시각이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 운영방식을 개선할 필요	p.57
	◦ 헌법재판소는 별관 지하 3층에 설치되어 있는 전기차 충전기 2대의 지상 또는 지하 1층 이설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는데, 집행 시 1대의 전기차 충전기만 이설하고 4대의 전기차 충전기를 추가로 설치한바, 확정된 예산을 편성목적에 맞게 집행하도록 노력할 필요	p.61
6. 헌법재판연구원운영지원 (1033-303)	◦ 국외통신원 운영 사업은 지속적으로 불용이 발생하고 있는바, 그 활용률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현재 활동 중인 13기 국외통신원의 경우 신규 지원율이 낮아 지원자가 전원 위축(경쟁률 1:1)된 상황이므로 다양한 홍보 방안을 마련하는 등 국외통신원의 지원을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 직무 수행에 적합한 양질의 국외통신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	p.66

사업별 구분	세부 검토사항	원본 페이지
	최근 3년간 특근매식비의 예산 및 집행현황을 살펴보면 연례적으로 50%가 넘는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는바, 예산의 과다 편성으로 재정운용의 효율성이 저하되지 않도록 전년도에 준한 관례적 예산편성이 아닌 실소요를 감안한 적정한 예산을 편성하도록 주의할 필요	p.72
7. 해외연수(1034-304)	연임 헌법연구관 연수와 관련하여 충실한 해외연수보고서 작성을 통해 해당 연수가 그 목적 및 내규상 취지에 맞게 운용되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결과보고서 제출의 적시성을 담보할 수 있는 규정을 추가하여 내규를 보완할 필요	p.75
8. 국제교류(1034-305)	AACC 연구사무국 운영 사업 관련하여, AACC 연구사무국 사무실의 관리비 부족에 따라 연례적으로 일반수용비(210-01) 세목에서 공공요금및제세(210-01) 세목으로의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동일한 사유로 인한 반복적·연례적 세목조정을 지양하고 편성된 예산이 국회에서 심의·의결한 대로 충실히 집행될 수 있도록 할 필요	p.82
9. 헌법재판소 발간물 관련 (총괄)	헌법재판소는 각종 발간물을 발간하면서 특정 두 업체와 다수의 계약을 체결한 측면이 있는바, 발간물 계약에 있어 관례적인 수의계약을 지양하고 다양한 발간물 업체들을 발굴하여 특정업체에 대한 계약편중을 완화할 필요	p.87

사업별 구분	세부 검토사항	원본 페이지
<총괄>		
1. 이·전용 등 개선	최근 3개년 이·전용 등 예산 변경 현황을 살펴보면, 그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므로 인건비 등 경상경비적 성격의 경비에 대해서는 추계를 보다 면밀하게 하여 예산안을 편성하고, 이·전용 등 예산의 변경은 국회의 예산 심의·확정 당시 예상하지 못했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정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	p.17
<일반회계>		
2. 징계부가금 (56-564)	징계부가금 징수 결정액 대비 수납률이 연례적으로 낮고,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징계부가금의 징수 결정을 하는 등 징계부가금의 징수 및 체납 방지를 위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방만한 징계부가금의 징수 및 체납 관리를 시정하고, 징계부가금의 징수부터 체납까지 체계적인 기록·관리를 위한 대책 마련 필요	p.29
3. 가족관계등록사무 (1136-351)	지방자치단체 간 가족관계등록사무 보조금 이자 발생액 편차가 다소 큰 측면이 있으므로, 각 등록관서별로 편차가 발생하는 원인을 파악하고 일관성 있는 방식으로 이자가 산정될 수 있도록 보조금 이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 보조금 관련 법령에서 보조사업자가 보조금 관리를 위해 별도 계정을 설정하도록 의무규정을 두고 있음에도 보조금에 대해 별도 계정을 설정한 곳은 약 19.7%에 불과하므로 등록관서의 보조금 별도 계정 사용률 제고 필요	p.35
4. 법관 등 연수 및 국제협력(1140-361)	법원공무원·법관 단기국외훈련 예산의 45%를 불용하고, 나머지는 연말에 집중적으로 집행하였으므로 단기국외훈련 시기를 분기별 또는 상·하반기별로 균형 있게 배분하는 등의 제도개선 방안 마련 필요	p.42
5. 사법행정의 효율성 증진(1142-401)	‘사법행정의 능률향상 및 역량강화’ 사업을 통해 위탁교육을 받은 이수자 중 퇴직자에 대한 교육비 환수조치가 미흡하므로 환수 조치의 이행을 강화하고, 미환수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퇴직 승인을 보류하거나 명예퇴직 수당 산정 시 해당 금액에 대해 공제·상계 등의 조치를 취	p.47

사업별 구분	세부 검토사항	원본 페이지
6. 재판절차비용지원 (1143-403)	할 수 있도록 명확한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는 등의 제도 개선 방안 강구 필요	
	◦ ‘법정언행컨설팅’ 사업의 이월이 연례적으로 발생하므로, 반복적 이월 구조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조치를 마련하는 등의 시정 필요	p.52
	◦ ‘진술조력인 제도’ 사업의 예산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는 해당 사업의 대상인 비상근 진술조력인에 대한 수당을 정확히 산출해야 함에도 시스템상 상근/비상근이 구분되어 있지 않은 데에 기인한 것이므로, 상근·비상근 구분에 따른 예산 집행체계를 정비하고, 수요 기반의 예산 편성 기준을 마련하는 등의 시정조치 필요	p.55
	◦ ‘중요재판중계운영’ 사업의 실적이 저조하고, 재판중계 대상 선정의 구체적 기준도 미비하므로, 연간 중계 계획 수립 시 현실적 예측치를 반영하고 장비 구매 등 고정비 항목의 필요성과 효율성을 점검하며 중계 대상 선정 기준 및 지침을 제도화하는 등의 제도개선 방안 마련 필요	p.59
	◦ ‘증인지원실 설치 및 운영’ 사업 항목에서 사법서비스진흥기금으로 집행 가능한 광역면접교섭센터 설치 예산을 편성·집행한 것은 부적절하므로, 증인지원실 신규 설치 필요성 및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기금 사업과 일반회계 사업을 구분 없이 병행 집행하는 방식을 지양하는 등의 시정 조치 필요	p.63
7. 사법정책연구개선 (1143-405)	◦ 송달료와 공공요금 추계의 부정확성으로 인해 ‘송달료’ 예산이 반복적으로 이·전용되고 집행 관리 체계가 미비하므로, 송달료와 공공요금 항목의 집행내역을 분리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세부 집행계정을 마련하고, 송달료 예산 추계의 정확성을 높이는 등의 시정 조치 필요	p.70
	◦ ‘국민 양형체험 프로그램’ 사업에서 연례적으로 일반용역비가 아닌 일반수용비를 편성해 콘텐츠 외주제작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므로, 예산 비목에 부합하게 재정당국과 협의하여 일반용역비로 예산을 편성할 필요	p.74
	◦ ‘법원정책연구비’ 사업 예산이 연례적으로 이월되고, 반복·유사 과제임에도 원가 산정을 외부 특정 기관에 위탁하고 있으므로, 과제 기획·계약 시점을 조기화하여 이월	p.77

사업별 구분	세부 검토사항	원본 페이지
	을 최소화하고, 반복 과제, 정형적 단가 구조를 갖는 과제에 대해서는 외부 위탁 없이 내부 기준에 따라 원가를 산정하도록 하며, 외부 위탁이 불가피한 경우 위탁 판단의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하는 관련 실무지침 또는 내규를 정비하는 등의 제도개선 방안 마련 필요	
8. 국선변호료지원 (1143-409)	◦ 각급 법원에서 국선변호료 지급 지연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각 법원에 배정된 예산이 조기에 소진되었거나, 배정 시점과 집행 수요 간의 불일치가 발생했기 때문으로 보이므로 예산 배정 시기나 방식을 탄력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지급 지연을 예방하고, 지급요청일·입금일 등의 정보를 재판사무시스템에 입력·집계해 대법원이 실시간으로 집행 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며, 입금 지연 시 관련 정보가 자동 보고되고 일정 기준 초과 시 경고나 감사 대상에 포함되도록 연동 체계를 마련하는 등의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	p.88
9. 전문재판운영 (1144-407)	◦ 스마트워크센터 설치를 위한 공사비를 자산취득비로 전용하여 사무용 비품을 구입한 것은 부적절하므로, 향후 유사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비목 간 전용에 대한 내부 통제 절차를 강화하고, 특히 공사비와 같이 시설 설치를 위해 구체적인 산출 근거에 따라 편성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사전 계획의 구체성과 실행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는 강화된 기준을 마련하는 등의 제도개선 방안 강구 필요	p.92
10. 사법업무 전산화 (1131-300)	◦ 일반수용비 부족으로 세목조정을 통한 예산 집행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에서 집행액의 51.7%를 조달수수료로 집행하였는데,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의 취지에 맞게 정보화사업 조달수수료를 해당사업의 비목으로 편성·집행하고 일반수용비 비목으로 편성·집행하지 않도록 주의 필요	p.97
11. 가족등록업무전산화 (1332-303)	◦ 공공요금 및 제세와 임차료 비목 예산을 연례적으로 불용하고 있으므로, 정확한 비용 추계를 통해 집행률을 제고할 필요	p.103
12. 도서관 운영지원 (7031-307)	◦ 도서관 시설유지관리를 위해 편성된 공사비 전액이 연수원 운영지원 사업으로 내역변경되어 집행된 것은 예산 편성 단계에서의 업무 미숙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데, 예	p.109

사업별 구분	세부 검토사항	원본 페이지
	산 편성에 필요한 절차나 회계처리 방식 등을 철저히 점검하여 불필요한 예산의 변경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	
13. 교육원 운영지원 (7031-309)	법원공무원교육원 청소근로자 등의 상용임금 예산이 연례적으로 과소 편성되어 내역변경을 통한 예산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정확한 추계를 통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 마련 필요	p.114
<등기특별회계>		
14. 기타잡수입 (69-691)	구 은평등기소 매각대금 분할납부로 인한 기타잡수입 예상 수납액을 다음연도 세입예산에 정확히 반영해 세입예산과 실제 수납액의 불일치를 해소하는 제도개선 방안 마련 필요	p.119
15. 건물매각대 및 토지매각대 (71-711)	국가재정 확충을 위해 유휴등기소 부지 활용 계획을 신속히 수립하여 조속히 매각하는 제도개선 방안 마련 필요	p.124
16. 등특 기본경비 (7011-271)	전용 증액한 국내여비 예산을 전액 불용하였으므로 정확한 예산 추계를 통해 불필요한 이·전용 등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주의 필요	p.129
17. 등기업무 운영지원 (7032-311)	인건비를 공공요금 및 제세로 전용한 후 다시 일반수용비로 세목조정하여 집행한 것은 인건비를 법정경비 등 지출이 불가피한 경비 부족시만 전용하도록 한 세출예산집행지침의 취지를 위반한 집행이므로, 인건비를 사실상 전용하여 일반수용비로 우회 집행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 필요	p.133
18. 미래등기시스템 구축 (1334-307)	상용소프트웨어 무상 하자담보기간의 착오로 불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여 전액 불용하였으므로, 향후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예산 편성시 계약 조건을 면밀히 검토해 불필요한 예산 편성과 불용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 필요	p.136
<사법서비스진흥기금>		
19. 여유자금 활용	사법서비스진흥기금의 주요 지출 대비 자체수입이 크게 발생하여 여유자금 규모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나, 과다한 여유자금 보유는 ‘특정 목적 사업의 수행’을 위한 기금 설립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기금 사업 확대 또는 타 회계·기금으로의 전출 등 과다한 여유자금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강구 필요	p.141

사업별 구분	세부 검토사항	원본 페이지
20. 기타재산이자수입 (54-546)	2023년의 국고보조금 이자 및 수익금 반환금을 2024년 이 아닌 2025년에 정산하는 등 최근 3년간 연례적으로 국고보조금 수익금 및 이자수익 반납을 지연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을 위반하는 등 국고보조금 정산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보이므로,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라 보조사업이 완료된 다음 해에 반납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보조금 관리에 유의 필요	p.145
	매년 기타재산이자수입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입의 발생 여부 및 규모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낮다는 이유로 기금 수입으로 편성하지 않고 있으므로 기금운용계획안 편성 시 최근 수납실적의 평균치 등을 활용하여 예산총계주의의 원칙에 따라 기타재산이자수입 편성 필요	p.148
21. 소송구조지원 (1161-301)	‘개인파산·회생 소송구조 사업’은 2024년 계획액이 증액 편성되었음에도 집행률이 77.0%에 그쳤고, 이는 회생사건의 지급건수 및 파산·면책 사건의 송달료 지급 단가를 과다 계상한 것에 기인하므로, 대상자 요건별 통계자료 등을 참고하여 소송구조 수요를 면밀히 추계하고 과거 지급단가 추이를 고려하여 송달료 단가를 현실적인 수준으로 계상하는 등 사업계획 시 집행가능한 적정 수준으로 계획액을 계상 필요	p.151
22. 법률구조단체 사업지원 (1161-303)	대법원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6조를 위반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으로부터 보조사업 집행잔액에 해당하는 ‘법원회수금’을 반납받지 않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이 당해 연도 말에 집행하였는데, 이는 국고보조금 관리의 투명성을 저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원회수금을 정산하여 반납받는 방안을 검토하고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라 보조사업자의 집행 및 정산 관리 필요	p.156
23. 소년보호 등 지원 (1161-304)	‘소년 등 집행감독활성화에 따른 전문가진단 등 비용지원 사업’은 최근 3년간 연례적으로 집행률이 저조하게 나타났는데 이는 전문가 진단 및 의견조회 실시 건수 자체가 적기 때문이므로, 대법원은 전문가 진단 및 의견조회 제도가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 활성화 방안 강구 필요	p.161

사업별 구분	세부 검토사항	원본 페이지
	◦ ‘가정법원종합지원센터 신축 사업’은 사업계획 보완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어 집행률이 1.6%로 저조하므로, 향후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하고 건립 이후 센터가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중장기 활용방안 수립 및 성과지표 마련 등의 방안 강구 필요	p.164
24. 사법서비스 향상 (1161-306)	◦ ‘인신보호제도 운영 사업’은 긴급하지 않은 계약을 긴급 입찰공고를 통해 연도말에 체결하여 8,400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는데 연도 말 예산 집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 필요	p.170
	◦ ‘국민참여재판 운영 등 사업’은 연례적으로 정책연구용역 계약을 하반기에 체결하고 다음 연도로 정책연구비를 전액 이월하고 있는데, 이는 「국가재정법」 상 회계 연도 독립의 원칙에 반하므로 정책연구용역과제 선정 절차를 개선하는 등 실질적 제도개선 방안 마련 필요	p.171

IV. 대체토론 요지

※ 회의록 참조

V. 소위원회 심사보고 요지

(소위원장 장경태)

법무부·법제처·감사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헌법재판소·대법원 등 우리 위원회 소관 6개 기관의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소위원회가 각 기관별로 심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먼저, 대법원 소관에 대하여는, ‘복리후생비 목적에 부합하는 예산 편성 및 집행 필요’와 관련하여 시정을 요구하였고, ‘이·전용 등 예산 변경 관행 주의 필요’ 등 총 9건에 대하여 주의를 요구하였으며, ‘송달료 세부 집행계정 마련 및 추계 정확성 제고 필요’ 등 총 12건에 대하여 제도개선을 요구하였음. 또한, 집행지침을 위반하여 복리후생비를 집행한 경위에 대해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음.

다음, 법제처 소관에 대하여는, ‘기타직보수 연례적 전용 지양’ 등 2건에 대하여 주의를 요구하였고, ‘법령해석 회신을 및 신속성 제고 필요’ 등 10건에 대하여 제도개선을 요구하였음.

다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관에 대하여는, ‘집행률 및 예산편성의 정확성 제고 필요’ 1건에 대하여 주의를 요구하였고, ‘수사·공소 관련 위원회 개최실적 제고 필요’ 등 총 5건에 대하여 제도개선을 요구하였음.

다음, 헌법재판소 소관에 대하여는, ‘인건비 집행률 제고 필요’ 및 ‘사건 처리의 신속성 제고 및 장기미제 사건의 관리를 위한 다양한 방안 마련 필요’ 등 총 15건에 대하여 제도개선을 요구하였음.

다음, 법무부 소관에 대하여는, ‘교정시설 과밀수용 문제 해결 필요’, ‘검찰 특활비 자료제출 필요’ 등 총 7건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였고, ‘검찰 특정업무경비 자료제출 필요’ 등 총 7건에 대하여 주의를 요구하였으며, ‘국가배상금 지급을 위한 연례적 과다 이·전용 개선 필요’ 등 총 43건에 대하여 제도개선을 요구하였음.

검찰 특활비 관련해, 검찰은 24년 특활비 집행내역을 일부 제출했고, 미흡한 자료에도 불구하고 예산남용 정황을 확인할 수 있었음.

12월 31일, 551원을 특활비로 지급하는 등 불용액을 0원으로 만들기 위해 털어쓰거나, 설 또는 추석 연휴 직전에 전국 검찰청 67곳 중 39곳에서 특활비를 지급하거나, 12월 한 달에 월평균 2배 금액을 집행하는 등 연말과 명절에 특활비 예산을 몰아쓴 점을 확인했음.

특히, 내란 당시 특활비 집행내역은 검찰의 내란 관여 의혹이 강력

히 제기됩니다. 대부분 특활비는 명절이나 12월 연말에 집중되는데, 가장 큰 규모로 지급되는 연말 심우정 당시 검찰총장은 12월 3일, 4일, 5일, 6일 단 4일간에 이례적으로 12월 특활비의 절반가량인 무려 45%를 지급하였음.

내란 당일 일주일 전후로는 검찰총장이 지급하는 1년 특활비의 14% 가량을 전폭적으로 집행했음. 법사위가 내란 당일부터 4일간, 그리고 내란 전후 집중 살포된 특활비에 대해 필요하다면 '수사 의뢰' 등 모든 방법을 총동원하여 검찰의 내란 관여 의혹을 밝혀야 할 것임.

끝으로, 감사원 소관에 대하여는 「국가재정법」 취지에 위배되는 국내여비 예산의 국외업무여비로의 전용'과 관련하여 징계를 요구하였고,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판결에 부합하지 않는 자료 미제출' 등 2건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였으며, '내역변경을 통한 증액 후 불용' 등 2건에 대하여 주의를 요구하였고, '결산보고서 작성시 오류 방지' 등 총 11건에 대하여 제도개선을 요구하였음.

또한, 감사원은 2025년 9월 20일까지 국회에 특수활동비 및 특정업무경비 관련 내역 등을 제출하기로 하였다는 점도 보고드립니다.

6개 기관 심사 과정 중 유일하게 감사원 결산 심사에 '징계' 요구한 건이 있습니다. 비목에도 없는 'G20 감사원장회의'에 국외출장비를 집

행한 건임. 이 회의 출장은 애초에 감사원이 예산을 요구했지만 기재부가 2024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전액 삭감했고, 당연히 당시 국회의 예산 심사 과정에서 논의조차 없었음.

감사원은 반려되어 전액 삭감된 비목도 없는 사업을 집행하기 위해 국제교류협력강화 사업 내 편성된 국외업무여비 예산으로 총 8,441만원을 집행했음. 이로 인해 당초 국외업무여비에 편성된 사업비가 부족하자 타 사업 감사활동경비 중 ‘국내여비’에서 ‘국외출장비’로 7,000만원을 전용해 집행했음.

감사원은 자체전용이 가능하다고 답변하였고, 소위 위원들은 기재부에 제출한 관련 자료를 심사 마지막까지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처음 제출한 자료는 국회에 제출한 자료였고, 그 다음 제출한 자료는 기재부 장관에게 제출한 자료였음.

소위 위원들에게 제출한 모든 자료는 ‘G20 감사원장회의’로 전용한다는 사유가 빠져있는 허위자료였음. 정리하면 비목도 없는 사업에 예산을 전용하였고, 이를 소명할 수 있다고 제출한 자료에는 관련 내용이 전혀 없었음.

국가재정법 위반뿐만 아니라 국회에 허위자료 제출하며 국회의 결산심의권을 침해한 사항으로 법사위는 ‘징계’ 요구와 함께 허위자료 제출에 대한 책임까지 강력히 물어야 할 것임.

VI. 심사결과

1. 법무부 소관

원안대로 의결함.

2. 법제처 소관

원안대로 의결함.

3. 감사원 소관

원안대로 의결함.

4.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관

원안대로 의결함.

5. 헌법재판소 소관

원안대로 의결함.

6. 대법원 소관

원안대로 의결함.

VII. 소수의견 요지

해당사항 없음.

VIII. 찬반토론 요지

※ 회의록 참조

IX. 시정요구사항 및 부대의견

[붙임] 참조

[붙임]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 결과

1.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예비심사 결과 : 총 128건

(단위: 건)

부처명	변 상	징 계	시 정	주 의	제도개선	(중 복)	합 계	기 타
법무부	-	-	7	7	43	-	57	
법제처	-	-	-	2	10	-	12	
감사원	-	1	2	2	11	-	16	
고위공직자범죄 수사처	-	-	-	1	5	-	6	
헌법재판소	-	-	-	-	15	-	15	
대법원	-	-	1	9	12	-	22	부대의견 1건
합계	-	1	10	21	96	0	128	

2. 시정요구사항

가. 법무부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	과태료 등 장기·과다 미수납액 관련 대책마련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세입 총괄	제도개선	법무부
		지적사항	○ 2024회계연도 법무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총 166억 6,600만원의 미수납액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대부분 장기·과다 미수납에 해당한다는 문제가 있음. - 구체적으로, ‘과태료’는 105억 1,200만원, ‘변상금’은 24억 7,000만원이 미수납되었는데, 이는 2024년도뿐만 아니라 대부분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이어져 온 사항이며, 그 밖에 ‘가산금’ (13억 2,400만원), ‘징계부과금’ (7억 1,800만원), ‘토지대여료’ (9,800만원) 등의 미수납도 장기간 이어지고 있음.		
		시정요구사항	○ 법무부는 장기·과다 미수납액 해소를 위한 지속적 수납 노력과 함께 근본적인 제도 개선 등 대책마련을 병행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2	토지대여료 등 수납실적 저조 항목 개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세입 총괄	제도개선	법무부
		지적사항	○ 법무부의 2024년도 세입예산액 대비 수납액은 당초 계획 이상의 실적을 보였으나, 일부 항목의 경우 수납실적이 저조하였음. - 구체적으로, ‘토지대여료’ (52.2%), ‘기타관유물대여료’ (76.5%), ‘변상금’ (32.8%), ‘위약금’ (49.7%), ‘가산금’ (25.6%), ‘기타경상이전수입’ (75.7%) 등 항목의 수납률이 저조함. - 특히, 이 중에서도 ‘토지대여료’, ‘변상금’ 및 ‘가산금’ 등 항목의 경우 저조한 수납실적이 연례적으로 반복되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는 관련 제도 운용이나 예산 편성이 실적과 연계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함.		
		시정요구사항	○ 법무부는 수납실적이 저조한 주요 세입항목별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여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수납실적이 연례적으로 저조한 항목의 경우에는 향후 세입예산액 규모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등의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3	일반용역비 집행 시 예산 규정 준수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세출 총괄	주의	법무부
		지적사항	○ 기획재정부 규정 취지에 반하여 일반용역비(210-14)를 컨설팅이나 조사·연구 목적 등 연구용역비(260목) 성격의 사업에 사용한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집행임. - 2024년 법무부에서 집행한 일반용역비 내역 중에는 일반용역비와 무관한 ‘만족도 조사’, ‘친절도 점검’, ‘컨설팅’, ‘효과성 분석’ 등에 활용된 것으로 나타남. ※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상 일반용역비(210-14목)는 ‘기관의 업무추진 과정에서 전문성이 필요한 행사운영, 채용, 영상자료 제작 등의 일상적인 업무를 용역계약을 통해 대행시키는 비용’ 으로 규정		
		시정요구사항	○ 법무부는 일반용역비로 집행되는 전 사업에 대해 비목 적합성을 확인하여 비목 취지에 맞게 사업비를 집행하고, 타 비목으로 집행하는 것이 필수적인 예산은 적정비목으로 변경·재편성함으로써, 일반용역비 집행 시 예산규정을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4	연구용역 연말 추진 및 예산집행의 적절성 점검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세출 총괄	제도개선	법무부
		지적사항	○ 연구용역을 연초부터 계획적으로 추진하지 않고 4/4분기나 연말에 추진한 과업들이 존재하고, 선급금(선금) 지급액과 지급시기에 문제가 없는지 적절성 점검이 필요함. - 2024년 법무부가 실시한 연구용역 현황은 총 123건(검찰국 46건, 법무실 25건, 범죄예 방정책국 14건 등의 순)		
		시정요구사항	○ 법무부는 소관 내 연구용역비(260목) 사업을 전수 조사·분석하고, 원인분석 및 대책 마련을 통해 연구용역이 보다 적절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집행관리를 철저히 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5	공익법무관 배치 적정성 검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국가송무수행 및 공익법무관운영(1031-300)	제도개선	법무부
		지적사항	○ 국가소송에 최근 신규로 임용되는 공익법무관의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공익법무관의 전체인원과 수요 대비 충원률이 70% 미만 상황이 지속되는 추세임에도 공익법무관을 그 주된 업무인 법률구조·국가송무와 관련성이 다소 떨어지는 법무부 부서에 다수 배치하고 있는바, 법률구조공단 배치 확대 등 조정이 필요함		
		시정요구사항	○ 법무부는 법률구조·국가송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각 기관의 업무량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기관별 재배치 및 변호사 채용을 위한 중장기계획 수립 등 공익법무관 감소현황에 대응하고 배치적정성을 검토할 것		
6	국가배상금 지급을 위한 연례적 과다 이·전용 개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국가배상금 지급(1031-301)	제도개선	법무부
		지적사항	○ 법무부는 국가배상금 부족분 발생 시 자체적으로 소속기관 인건비 등으로부터 매년 예산을 이·전용하여 집행하고 있음. 지난 2023년에도 예산 전용 등 부정확한 예산편성을 지적한 바 있으나, 국가배상금 지급을 위한 2024년도 이·전용 등 규모는 오히려 2023년 대비 급증하였음 - 다른 사업으로부터의 이·전용 규모가 과다할 경우 이·전용에 따라 감액된 사업에 차질이 발생하고, 전반적인 예산집행의 성과와 효율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으며, 나아가 정부 제출 예산 사업에 대한 국회의 심의·의결권 침해 소지도 있음		
		시정요구사항	○ 법무부는 국가배상금의 지급 예상 규모를 정확하게 추산하여 예산을 적정 규모로 편성하도록 노력하는 한편, 이·전용 등을 최소화하여 예산집행 규모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방안도 함께 마련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7	국가배상금 지연손해금 이월액 최소화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국가배상금 지급(1031-301)	제도개선	법무부
		지적사항	○ 국가배상금은 확정된 판결이나 배상결정 후 임의변제청구서가 접수된 날부터 1주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며, 국가배상금의 지급이 법적으로 정해진 기한 내에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그 지연 기간에 대해 추가로 지연손해금이 발생함 - 최근 3년간 발생한 지연손해금은 2022년 213억 9,700만원, 2023년 152억원, 2024년 137억 6,800만원이며, 당해연도에 발생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다음 연도에 지급한 지연손해금 이월액은 2022년 1억 4,934만원(14건), 2023년 3,566만원(9건), 2024년 1억 7,053만원(23건)으로 나타남		
		시정요구사항	○ 법무부는 지연손해금 이월액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이월액 최소화 방안을 마련할 것		
8	대한상사중재원의 국제중재실적 제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성장동력확충을 위한 기업법제 선진화(1033-304)	제도개선	법무부
		지적사항	○ 국제중재센터는 2019년 사건접수 70건 및 수수료 수입 약 8억원을 기록한 이후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이며, 2024년의 경우 국제중재 사건접수 건수 48건 및 수수료 수입 약 5억원임 ○ 국제중재유치 강화 등(약 2억 6천만원)의 예산을 제외하고도 2024년 국제중재센터의 운영 보조금은 13억 4,900만원 정도이나 국제중재의 수수료 수입은 5억 700만원으로, 국제중재의 국내유치 실적이 당초 기대에 못 미치고 있음		
		시정요구사항	○ 법무부는 향후 교육사업 등을 통해 중재 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해사 사건 중재 역량 강화 또는 엔터테인먼트 산업 중재 등 대한상사중재원의 특성화 방안, 해외 기업뿐만 아니라 국내기업 상대 홍보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9	공익신탁 활성화 미흡, 중·장기적 대책 마련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성장동력확충을 위한 기업법제 선진화(1033-304)	제도개선	법무부
		지적사항	○ 공익신탁제도는 10년 경과되었으나 실제 운영·집행 실적은 매우 저조하고, 집행이 없는 신탁이 상당수라는 점에서 거의 활용되지 못하고 있음 ○ 신규 인가 및 기부금 규모 역시 기대에 미치지 못하며, 법에서 규정한 3년 내 집행 의무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등 제도 활성화에 역부족인 상황으로 제도의 활용 가치가 제한적임		
		시정요구사항	○ 법무부는 장기 미운영·미집행 신탁 관리 강화, 홍보효과 분석 및 계층별 수요조사 선행, 세제혜택 개선 및 새로운 기부 모델 창출 등 중·장기적 추진계획을 국회 및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마련할 것		
10	전자공증제도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공증제도운영 및 활성화(1038-300)	제도개선	법무부
		지적사항	○ 2024년 예산액 8억 2,000만 원 중 불용액이 9,300만원이었으나 2025년에도 유사한 수준으로 예산이 편성됨 ○ 저조한 전자공증 이용률, 규모가 작은 지정공증인으로 인한 제약, 효과 분석이 어려운 홍보예산 집행 등의 문제점이 있으므로 사업의 효과성이나 필요성이 충분히 평가될 수 있는 집행을 할 필요가 있음		
		시정요구사항	○ 법무부는 시민 인식 조사·시스템 만족도 조사를 정례화하여 참여율을 높이고, 지정공증인 확대·전자확정일자 도입, 전자공증 기능을 확대하는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1	마을변호사 사업 효율적 예산 집행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변호사제도 선진화(1038-303)	제도개선	법무부
		지적사항	○ 현재 1,425개의 마을에 마을변호사를 배치하고 있으나, 1개 마을에 3~4명을 배치한 경우도 있고, 3~4개 마을에 1명의 변호사를 배치한 경우도 있으므로 구체적으로 무변촌 현황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배치 적정성을 기할 필요가 있음 - 마을변호사의 상담실적 역시 법무부에서 별도 관리하고 있지 않으므로 사업의 실적 평가 및 이용자의 평가 체계도 파악하기 어렵고 지역별 상담 건수 및 수요파악이 되지 않아 마을변호사 배치 적정성을 기할 근거가 없음		
		시정요구사항	○ 법무부는 마을변호사 상담실적, 이용자 평가 체계를 구축하여, 마을변호사 배치의 적정성을 제고할 것		
12	변호사시험 관리시스템 구축 고도화 중·장기적 계획 수립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변호사시험 및 법조윤리시험관리(1038-305)	제도개선	법무부
		지적사항	○ 법무부는 변호사시험에 CBT 방식을 도입하였음에도, 출제 중복검사, 채점, 문제은행 관리 등은 전산화하지 않아, 여전히 종이 기반의 출제·채점 프로세스를 유지하고 있고, 기출 문제 제출률이 30%미만으로 매우 낮음 - 채점보조인력 및 문제은행 전자화 인력도 예산 불용이 발생하는 등 시스템 구축이 미흡하고 시험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시정요구사항	○ 법무부는 법전원 기출문제 제출률을 제고하기 위해 효과적인 인센티브 및 보안 대책 방안을 마련하고, 시험관리의 전산화 및 고도화를 위해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며, CBT 도입에 따라 불용된 채점보조인력 예산을 감액 편성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3	연례적 정책연구비 이월 최소화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통일대비 법률통합 실질화(1041-300)	주의	법무부
		지적사항	○ 통일대비 법률통합 실질화 사업의 정책연구비는 2023년에도 4,400만원을 이월하였고, 2024년에도 6,600만원을 이월함 - 2023년에도 건 중 4건을 4분기에 수의계약으로 체결하고, 2024년에도 8건 중 4건을 4분기에 수의계약으로 체결하였으나 수의계약이 지속적으로 반복될 만큼 불가피한 상황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연말에 정책연구를 몰아 체결하여 이월금이 지속 발생하는 문제 개선 필요함		
		시정요구사항	○ 법무부는 통일대비 법률통합실질화 사업의 연례적 정책연구비 이월 및 과도한 수의 계약 체결을 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14	아동학대 사건 관리회의 지원 효율적 예산 집행 및 활성화 방안 마련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아동인권증진(1133-302)	제도개선	법무부
		지적사항	○ 아동학대사건의 접수 및 처리건수의 총계가 매년 상당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에도 아동학대 사건관리회의의 개최 실적은 최근 3년간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음. ○ 향후 아동학대사건의 양적 규모가 증대될 것으로 예측된다는 점을 고려 시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통한 적절한 피해아동 구제 등을 위하여 아동학대 사건관리회의의 활성화가 바람직함.		
		시정요구사항	○ 법무부는 아동학대 사건관리회의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피해아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회의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운영 지침 보강, 예산 불용 방지, 회의실적 관리를 통하여 실효성 있는 자문체계를 확립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5	서민 법률보호를 위한 법률홈닥터 시스템 고도화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서민 법률보호를 위한 법률홈닥터(1131-301)	제도개선	법무부
		지적사항	○ 법률홈닥터 사업은 법률구조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을 지원한다는 취지이나, 계층 선택이 자율적으로 가능한 구조로 ‘기타’ 계층 선택 비율이 전체의 34% 이상인 바 사업의 적정성 등 판단이 어려움. ○ 전화·방문 예약 시 취약계층 확인 절차가 미흡하고 계층별 이용 현황이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않고 있음. ○ 매 상담마다 취약계층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하여 접근성 문제 있음.		
		시정요구사항	○ 법무부는 법률홈닥터 회원가입 단계에서 취약계층 확인 서류 제출 의무화 등을 통하여 실적통계를 정확히 수립하고, 계층별 지원 효과를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며, 계층 이동이 적은 대상군에 대하여 계층 확인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으로 시스템을 개선할 것		
16	범죄피해자 원스톱솔루션센터 효율적 예산 집행 필요	관련사업명	범죄피해자보호기금 - 범죄피해자 치료 및 자립지원(1135-300)	제도개선	법무부
		지적사항	○ 여성가족부의 지원을 받는 해바라기센터, 보건복지부의 지원을 받는 지자체 아동보호 전문기관 등 현재 원스톱솔루션센터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부처·기관이 존재하여, 지원 체계 연계가 부족 ○ 원스톱솔루션센터는 현재 서울시에만 1개소로 운영되고 있어 범죄피해자들의 접근성이 제한됨		
		시정요구사항	○ 법무부는 참여기관 확대를 통한 통합적 지원 보장, 온라인 상담 활성화를 위한 개별 홈페이지 구축, 센터의 전국 확대 검토를 위한 인력 구성의 적정성 점검, 범죄유형 및 연계서비스에 대한 실적 관리 등 시스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7	민간경상보조금 집행의 투명성 제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이민정책연구원 운영(1231-302)	제도개선	법무부
		지적사항	○ 회의비 집행과 관련하여 집행목적을 불명확하게 작성한 사례가 존재하여 개선이 필요하고, 근거를 알 수 없는 사업에 집행된 사례도 존재하므로, 사업추진 경위·목적·근거·효과 등에 기초하여 예산액을 산정·편성하여 집행할 필요가 있음.		
		시정요구사항	○ 법무부는 이민정책연구원이 예산 집행용도를 보다 자세히 작성하게 하고, 사업 근거를 보다 명확하게 하여 회계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조치할 것		
18	세부사업비 혼용 지출 유의 및 법적 근거 마련한 사업 추진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출입국정보시스템 운영(정보화, 1232-305)	제도개선	법무부
		지적사항	○ 2018년 사업비 개편* 당시의 취지와는 다르게 일부 사업비와 다른 사업의 기본경비를 함께 혼용하여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2018년부터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정보시스템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① 법무행정정보화(기획조정실 소관), ②출입국관리사무소 시설운영, ③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제운영(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소관) 3가지 사업을 통합하여 하나의 세부사업비로 편성·집행 ○ 외국인 계절근로 통합인력관리플랫폼 구축사업은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예산을 편성하고 추진함.		
		시정요구사항	○ 법무부는 출입국정보시스템 사업과 관련 세부사업비 간의 혼용지출을 방지하고,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다음 사업을 추진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9	사업이 폐지되지 않도록 재정사업 자율평가 등급 제고 노력 시급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외국인보호관리(1233-300)	제도개선	법무부
		지적사항	○ 최근 3년간의 재정사업 자율평가에서 연속 ‘미흡 2회’와 ‘보통 1회’ 등급을 받아 평가결과가 계속 저조한 상황이고, 지출구조조정으로 2024년도 사업비 11억 5,400만원이 삭감되었으며, 내년에 미흡 평가를 받을 경우 기재부 지침에 따라 사업 폐지 논의가 진행될 수 있어 사업 관리가 매우 시급한 상황임. ※ 기재부는 재정성과관리 강화방안의 일환으로 2022회계연도 이후 재정사업 자율평가에서 3년 연속 미흡 등급을 받는 경우 해당 사업을 ‘원칙적으로 폐지’하는 것으로 지침을 개정하여 강조한 바 있음.		
		시정요구사항	○ 법무부는 외국인보호관리사업이 재정사업 자율평가에서 미흡등급으로 사업폐지 논의가 진행되지 않도록 관련 예산을 적정하게 재편성하고 집행관리를 철저히 할 것		
20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의 이수기준 검토 및 효율적 예산집행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제운영(1233-304)	제도개선	법무부
		지적사항	○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사업은 상대국* 배우자의 입국허가요건을 국내 배우자의 강의 수강 여부에 의해 결정되도록 함으로써 사적 영역을 제한하고 있음. - 2015년 UN특별보고관 권고 : ‘특정 국가의 여성과 결혼하고자 하는 남성들에게 국제결혼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을 받도록 요구하는 제도를 없애기 위해 정부가 노력할 것’ * 법무부장관이 고시하는 국가(7개국): 중국,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몽골, 우즈베크, 태국		
		시정요구사항	○ 법무부는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의 이수 및 면제 요건 등을 점검하고, 고시국가 지정 기준을 합리적으로 재설정하며, 사업의 효과성을 판단하기 위한 체계적인 수단을 마련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21	관례적인 인건비 이·전용을 통한 여유 자원 활용 지양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출입국관리사무소 운영인건비(총액, 7002-100)	제도개선	법무부
		지적사항	○ 2024년 출입국외국인관서 운영인건비에서 총 17억 8,500만원을 이·전용한 뒤 타 사업비 부족분에 활용하였고, 최근 4년간 이·전용이 관례화되는 추세로 보임. - 2024년 이·전용 후 집행 내역: 국제법무국기본경비(7011-266) 5억원, 출입국외국인관서 운영기본경비(7018-250) 1억 8,500만원, 출입국외국인관서 시설운영(1232-300) 6억원, 국가배상금 지급(1031-301) 5억원 ※ 기획재정부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은 인건비 비목에 잉여재원이 발생하더라도 다른 비목으로의 전용은 최소화하도록 규정 ○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의 직접적인 효과성을 측정하기 위한 성과지표가 부재하여 개발할 필요가 있음.		
		시정요구사항	○ 법무부는 집행 점검을 통해 인건비를 감액 조정하거나 이·전용을 최소화하여, 인건비가 여유 재원으로 반복 활용되지 않도록 개선할 것		
22	난민심사를 위한 전문임기제 방식 운영의 적정성 점검 및 보완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출입국관리사무소 운영인건비(총액, 7002-100)	제도개선	법무부
		지적사항	○ 2024년에 전문임기제(다급) 33명에 대한 기타직 보수(110-02)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여 7억 6,700만원을 이·전용으로 마련한 뒤 집행하고, 2024년 인력 충원 및 운영도 원활하지 못함. ○ 난민심사 수요증가에 제대로 대응하고 관련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문임기제가 아닌 정식 직제내의 정원으로 인력을 운영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할 필요가 있음.		
		시정요구사항	○ 법무부는 현재 운영 중인 전문임기제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바탕으로, 난민심사 인력 충원 및 운영에 대한 대책을 면밀히 수립·추진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23	검찰 특수활동비 관련 자료제출 등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검찰활동(1300) 내 특수활동비	시정	법무부
		지적사항	○ 국가가 검찰의 특수활동비 사용내역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법무부와 검찰청은 상세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음. ○ 법무부와 검찰은 특수활동비 정기분 및 수시분 관련 집행명목, 수령인은 모두 비공개 하고, 금액 및 일자만 열람할 수 있도록 함. - 이에 대하여 익명처리한 수령인을 표기해서 제출하고, 특활비 환수 사례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으나 아직까지 제출하지 않음.		
		시정요구사항	○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검찰 특수활동비에 대한 국회의 실질적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용내역을 투명하게 공개·제출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24	검찰 특정업무경비 자료제출 관련 주의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검찰활동(1300) 내 특정업무경비	주의	법무부
		지적사항	○ 법무부와 검찰은 특정업무경비와 관련하여 정부구매카드의 경우 ‘사용일자, 가맹점명, 승인금액’ 만 제출하고, 수사활동비의 경우 ‘이름,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는 비공개처리하고 ‘금액’ 만 제출 - 이에 대하여 카드사용내역 관련 일시(시간) 및 인원(명수), 그리고 특정업무경비에 대한 환수 사례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아직까지 제출하지 않음.		
		시정요구사항	○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검찰 특정업무경비 사용내역을 투명하게 공개·제출하여 국회의 실질적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의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25	검찰 특정업무경비 유용 의혹 및 자료제출 거부 관련 시정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검찰활동(1300) 내 특정업무경비	시정	법무부
		지적사항	○ 2024년 7월 1일 당시 수원고검장이 안산지청을 방문 후 안산지청장 등 10명과 회식을 하는 과정에서 특정업무경비 98만원을 사용한 것이 확인되었으나, 이는 기재부 예산편성지침에 따른 특정업무경비의 용도에 맞지 않는 것으로서, 수사·감사·조사 등 특정업무 수행을 위한 특정업무경비를 회식비로 유용한 것에 해당함. ○ 또한, 이와 관련하여 당시 검찰과장 등 담당자는 국회에서 요구한 자료의 제출을 거부 및 지연하였으며, 위 회식에 특정업무경비를 사용한 것이 ‘부적절하지만 지침에 맞게 집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거짓으로 답변하였음.		
		시정요구사항	○ 법무부는 검찰 특정업무경비를 관련 지침에 맞게 집행하도록 하고, 국회 요구자료에 대하여 정확하게 답변·제출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26	시설장비유지비 과다전용 지양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검찰청 시설운영(1333-300), 검찰청 운영 기본경비(7018-252)	제도개선	법무부
		지적사항	○ ‘검찰청 운영 기본경비(7018-252)’의 경우 전국 검찰청의 건물 유지보수 및 차량유지를 목적으로 편성된 시설장비유지비(210-09)의 2024년도 예산액은 8억 1,800만원이었으나, 예산액의 68.1%에 이르는 5억 5,700만원을 국내여비(220-01)로 전용하거나(4억 8,200만원) 일반수용비(210-01)로 세목조정하여(7,500만원) 집행함. ○ 또한, ‘검찰청 시설운영(1333-300)’의 경우에도 전력설비 및 통신시설, 출입통제시스템 등 유지보수 및 기타 시설물·기계설비 점검 등을 위해 편성된 시설장비유지비(210-09) 중 6억 1,400만원을 국내여비(220-01)로 전용하거나(3억 4,000만원), 일반수용비(210-01)로 세목조정하여(2억 7,400만원) 집행함.		
		시정요구사항	○ 법무부와 검찰청은 시설장비유지비의 과다한 이·전용 등을 반복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연례적으로 과다한 이·전용 등이 이루어지는 항목의 경우 예산 편성단계에서부터 실제 소요를 반영하여 적정 규모의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27	검사 국외훈련비 관련 타 공무원과의 형평성 제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검찰국외훈련 및 국제형사협력지원(1333-301)	제도개선	법무부
		지적사항	○ 검사 학위과정 학자금은 연 6만 달러로 법관(5만)·공무원(2.2만) 대비 과다 지급되고 있으나, 환수 대상자 수, 금액, 논문 표절률 등 주요 현황 자료를 비공개해 국회 심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있음. ○ 국외훈련을 마친 검사의 연구논문이 전체 공개되지 않고 선별적으로 공개되고 있는바, 이는 공무원 국외훈련결과보고서가 모두 공개되는 것과 대조적임.		
		시정요구사항	○ 법무부는 법관 등 타 공무원의 경우와 비교하여 검사 국외훈련에서의 학자금, 체재비 등을 검토하여 형평성을 맞추도록 노력하고, 비공개대상정보가 아닌 정보에 대하여는 국회 결산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28	검찰 국외훈련비 관련 부당사용자들에 대한 조치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검찰국외훈련 및 국제형사협력지원(1333-301)	시정	법무부
		지적사항	○ 동 사업과 관련해서는 법관보다 기본학자금 및 가산한도가 높다는 점, 국외훈련 관련 보고서, 논문 등 자료를 공개하지 않는 점 등의 문제가 있었음. ○ 또한, 2022년 말부터 현재까지 16명의 환수 조치를 취했다고 하나, 환수 조치만 이뤄졌을 뿐 이에 대한 주의, 경고 등 어떠한 조치도 이뤄지지 않음. ※ 환수된 금액은 총 지급훈련비 6억 7천만원 중 8천 6백만원 정도의 금액으로, 이는 검사 국외훈련운영규정에 따라 훈련비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환수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며, 법무부는 체재비 2배('23. 1. 31.) 또는 4배('23. 1. 31. 이후) 환수. 체재비는 학자금을 제외한 체류기간 동안 지원된 비용을 의미.		
		시정요구사항	○ 법무부는 종전 전수조사 결과에 따른 국외훈련비 환수대상자에 대해 적극 조치를 취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29	예산 증액 시 실제 소요액 추계의 정확성 제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과학수사 인프라 구축(1333-302), 공공수사(1335-302)	제도개선	법무부
		지적사항	○ 법무부는 ‘과학수사 인프라 구축’ 및 ‘공공수사’ 사업의 예산을 실제 소요에 맞지 않게 과다 증액하여 이·전용 등이 크게 발생하였음. - 대표적으로, ‘통신자료 제공 통지 대행료’ 등 명목으로 일반수용비 9억 6,600만원을 증액하여 총 17억 3,700만원 규모로 편성하였으나, 실제 집행액은 8억 7,000만원에 불과하였음. - 공공수사 사업의 ‘포상금’ 예산 또한 전년 대비 77.3%를 증액하였으나 실제 집행률은 8.0%에 그쳤음. ○ 반대로, 국내여비의 경우 2023년 예산이 크게 부족하여 당초 예산액을 초과 집행하였음에도 2024년도 예산 편성 시 이를 증액하지 않아, 2024년에도 재차 다른 항목으로부터 전용받아 집행하였음.		
		시정요구사항	○ 법무부 및 검찰청은 예산 증액 시 그 소요액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함으로써, 실제 필요한 항목에 적정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개선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30	예산 편성 · 집행 전반에서의 철저한 관리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인권보호 등 검찰업무지원(1333-306)	제도개선	법무부
		지적사항	○ ‘공사비(420-03)’ 및 ‘자산취득비(430-01)’ 등 항목의 집행실적이 저조할 뿐만 아니라, 이들 항목의 잔액을 다른 항목으로 과다하게 전용하여 집행한 문제가 있음. - 먼저, 구치감 및 민원실 등 환경개선 목적으로 편성된 공사비(420-03)의 경우 2024년도 당초 예산액은 14억 2,500만원이었으나, 이 중 9억 600만원만 집행하고, 예산액의 36.2%인 나머지 5억 1,600만원을 모두 공공요금 부족분으로 전용하였음. - 또한, 전국 검찰청의 수사장비 구입 및 각 청사 내 도서관의 도서구입 등을 위하여 편성된 자산취득비(430-01)의 경우에도 2024년도 당초 예산액은 6억 2,000만원이었으나, 이 중 4억 600만원만을 집행하고 예산액의 34.5%에 해당하는 2억 1,400만원을 공공요금 및 형사보상금 부족분으로 전용 · 집행하였음.		
		시정요구사항	○ 법무부와 검찰청은 인권보호 등 검찰업무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전반적인 예산 편성 · 집행을 철저히 관리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31	일반수용비를 실제 소요에 맞게 편성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형사부 등 수사지원(1335-301) 등	제도개선	법무부
		지적사항	○ ‘형사부 등 수사지원’ 사업 등에 편성된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비용’ 목적 일반수용비(210-01)는 지난 2024년도 예산안 심사과정에서도 연례적 실적 부진이 지적되어 예산이 감액되었으나, 그럼에도 여전히 집행실적은 매우 저조하였는바, 이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이 처음부터 과다 편성되었기 때문임. ○ ‘영장심의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편성된 일반수용비 또한 집행실적이 예산액 대비 4.8%에 불과한바, 실제 소요액 대비 과다 편성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임.		
		시정요구사항	○ 법무부와 검찰청은 일반수용비의 과다 편성으로 집행잔액이 대규모로 발생하거나, 그 잔액을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실제 소요액을 보다 정확히 추계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32	공공요금 납부 등을 위한 과다전용 반복에 대한 주의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국민생활침해범죄수사(1335-303) 등	주의	법무부
		지적사항	○ 법무부와 검찰청은 공공요금 등 부족분 충당을 위해 다른 항목의 경비를 과다 전용하였음. - 2024년도 검찰청 소관 공공요금 및 제세(210-02)는 당초 총 291억 5,8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2023년도에 이어 재차 상당 규모의 부족액이 발생함에 따라 예산액 대비 14.1%인 41억 2,100만원을 다른 목적으로 편성된 경비로부터 전용하여, 총 332억 3,400만원을 집행함. - 특히, ‘인권보호 등 검찰업무지원(1333-306)’ 사업의 경우 7억 700만원을, ‘검찰청 시설운영(1333-300)’ 사업의 경우 9억 3,200만원을 공사비(420-03)와 자산취득비(430-01)에서 전용하였음. ※ ‘인권보호 등 검찰업무지원’의 경우 전용액을 더한 전체 공공요금 및 제세 집행액이 당초 예산액의 162.0%에 이른다는 점, 그리고 이는 공사비 예산액의 36.2% 및 자산취득비 예산액의 30.8%를 각각 전용한 것이라는 점에서 예산집행의 전반적 성과와 효율성을 저해한 사례로도 볼 수 있음.		
		시정요구사항	○ 법무부 및 검찰청은 기관운영에 필수적인 공공요금 등의 적정 소요액을 최대한 정확하게 추산·편성함으로써, 필수경비 부족으로 다른 사업으로부터 대규모로 예산을 이·전용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33	집행가능성과 실제 소요를 반영한 마약수사 예산 편성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마약수사(1335-304)	제도개선	법무부
		지적사항	○ 정부는 2023년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며 마약 대응 예산을 대폭 확대하였고, 그에 따라 2024년도 예산에 ‘가상화폐추적수사 지원’, ‘마약수사사례 제작’, ‘마약 범죄정보 제작’ 등을 신규 편성하여 일반수용비 예산을 크게 증액하였으나, 실제 집행률은 매우 저조함. - 세부적으로, 마약사범수사 관련 마약류 오·남용 예방 홍보용 책자 발간, 국내외 자료구입비 및 마약범죄 국제공조활동 통역비 등은 집행액이 0원이고, 마약사범 수사용품 구입(4.6%), 마약전문수사요원 집합교육비(6.2%), 마약류 사범 판별 검사 등 제반비용(8.3%) 및 마약수사사례·범죄정보 제작(32.8%)의 예산 등도 집행률이 저조함.		
		시정요구사항	○ 법무부는 마약수사 사업의 일반수용비 편성 시 인쇄비 등 경상적 성격의 비용은 실제소요를 면밀하게 파악하여, 집행 가능하고 필요성이 인정되는 예산을 적정 규모로 편성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34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수사 내역사업의 연례적 실적부진 주의 및 개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수사(1335-305)	주의	법무부
		지적사항	○ 다음과 같이 집행실적이 부진한 내역사업이 다수 있었음. - ‘디지털성범죄 등 사회적 약자대상 범죄 관련 전문화 교육’의 경우 매년 9,1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2024년 기준 771만원만이 집행되어 8.5%의 집행률을 보이는 등 실적이 저조함. - ‘스토킹범죄 등 대응역량 강화’ 및 ‘피해자 재활을 위한 심리, 예술치료’도 집행률이 20%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 ‘준법강의 등 학교폭력예방활동’ 및 ‘결정 전 교사의견 청취 제도’의 경우, 실적 부진을 수차례 지적받은 이후 이전보다는 크게 개선되었으나, 2024년도 집행률이 각각 51.4% 및 53.3%로 아직 충분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보임.		
		시정요구사항	○ 법무부 및 검찰청은 ‘사회적 약자 보호 강화’라는 본 사업의 취지 및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향후 내역사업의 실적부진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35	형사상고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존중하여 신중한 상고제기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공판활동지원(1337-300)	제도개선	법무부
		지적사항	○ 최근 2년간 상고 포기 의견 등 심의결과를 준수하지 않고 상고를 제기하는 사례가 급증하였으며, 다른 유사 위원회와 비교하더라도 형사상고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준수율이 유독 떨어짐. - 심의위원회의 상고 포기 의견에도 검사가 상고를 제기하는 사례가 지나치게 많을 경우, 대검찰청이 형사상고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한 당초 취지가 몰각될 수 있음. - 뿐만 아니라, 이미 1심·2심에서 전부 무죄가 선고되었고 심의위원회도 심의기준에 따라 상고 인용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하여 ‘상고 포기 의견’을 의결하였음에도 검사가 상고를 강행하는 것은 공권력을 통해 피고인의 형사절차로부터의 해방을 지연시켜 그 지위를 불안정하게 하는 무리한 공소 유지에 해당하는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보임.		
		시정요구사항	○ 검찰청은 향후 형사상고심의위원회 구성취지 및 심의결과를 존중하여 상고제기를 더욱 신중하게 결정하도록 하고, 일정 요건하에 심의위원회 결정의 기속력을 인정하는 방향으로의 제도개선 등도 검토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36	다른 사업 예산의 이·전용을 통한 형사보상금 지급 최소화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형사보상(1337-302)	제도개선	법무부
		지적사항	○ 검찰의 형사보상금 지급 규모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최근 4년간 타 사업으로부터 607억 9,000만원을 이·전용하고, 총 2,207억 8,000만원을 집행하였음. - 2024년 기준으로는 372억원 이상을 다른 사업으로부터 이·전용하였고, 특히 ‘마약수사’ 예산에서도 4억 9,000만원을 이·전용함. ○ 또한, 가장 많은 보상 건수를 기록하고 있는 ‘무죄비용보상’의 경우 최근 5년간 매년 2,000건 수준으로 발생하고 있는바, 검사의 수사과정에서의 과오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시정요구사항	○ 법무부는 형사보상 예산의 적정 규모 편성 및 수사과정상 과오를 줄이기 위한 제도적 노력 등을 바탕으로, 다른 사업 예산의 이·전용을 통한 형사보상금 지급을 최소화하도록 개선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37	검찰청 인건비 예산편성의 정확성 제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검찰청 운영 인건비(총액, 7002-101)	제도개선	법무부
		지적사항	○ 전반적으로 인건비 예산이 매년 과다하게 편성되어 그 잔액이 다른 사업에 집행하기 위한 이·전용 등 재원으로 활용되거나 불용액의 과다 발생 문제가 반복되고 있음. - 검찰청 인건비의 결산내역을 살펴보면, 2024년도에는 325억 3,800만원을 다른 사업에 이·전용하고 58억 5,500만원을 불용하였으며, 2023년도에도 149억 2,600만원을 이·전용, 75억 3,500만원을 불용하였음. - 이·전용 등 규모가 크지 않았던 2022년도 및 2021년도의 경우에는 불용액이 각각 205억 8,800만원 및 408억 1,400만원 규모로 발생하였는바, 검찰청 인건비 예산은 연례적으로 과다편성되고 있는 상황이라 할 수 있음. 이에 대해서는 과거에도 국회에서 여러 차례 지적이 있었으나, 같은 문제가 여전히 반복되고 있는 것임		
		시정요구사항	○ 법무부와 검찰청은 인건비 예산편성의 정확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38	검찰청 실무수습 변호사 채용실적 부진 개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검찰청 운영 기본경비(총액, 7018-202)	제도개선	법무부
		지적사항	○ 2024년도 실무수습 변호사 채용실적을 살펴보면, 법무부는 당초 총 86명의 실무수습 변호사 채용을 계획하였으나 실제로는 62명만을 채용하는 데 그쳤음. - 그 결과, 예산액 12억 9,500만원 중 실제 집행액은 총 6억 9,400만원에 불과하여 집행실적은 전반적으로 저조하였고, 상당 부분을 다른 사업에 전용(3억 1,300만원)하거나 불용(2억 5,500만원)함. ○ 이는 검찰청 등의 채용실적이 부진했기 때문으로, 법무실을 비롯한 각 부서는 당초 계획을 대부분 달성하였으나, 검찰청의 경우 당초 35명 채용을 계획하였음에도 실제 채용은 19명에 불과하여 계획 대비 절반 수준의 실적을 보였음.		
		시정요구사항	○ 법무부 및 검찰청은 실무수습 변호사의 채용실적 부진이 반복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39	법률서비스 무역수지 제고 방안 모색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총괄	제도개선	법무부
		지적사항	○ 법률서비스 무역수지는 2024년 2분기 대비 2025년 2분기에 적자폭이 27% 증가함. 미국과의 관세협상 등으로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이 확대되고 각국의 정책변화, AI, 에너지 등 여러 새로운 분야에 대한 법률자문 수요증가가 예상됨. 그러나 법무부는 법률서비스 무역수지 현황관리를 별도로 하고 있지 않은 실정임		
		시정요구사항	○ 법무부는 시장변화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법률서비스 무역수지TF를 신설하는 등 법률서비스 무역수지가 개선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40	국제법 전문위원 공백기간 최소화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국제거래 및 국제통상 법률지원(1431-301)	제도개선	법무부
		지적사항	○ 영문 에디터 1인과 국제법 전문위원 2인의 공무원 보수로 2024년 집행액은 1억7,500만원으로 집행률이 87%이며, 공무원 인건비 집행부진은 2022년부터 3년간 지속되었음 - 이와 같은 국제법 전문위원의 높은 퇴직률이 유지될 경우, 업무 연속성이 저하되고 국제법률 자문업무의 효율성이 낮아지며, 조직 운영의 불안정성을 초래하게 됨		
		시정요구사항	○ 법무부는 공백 기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채용절차의 신속한 진행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전문위원 처우개선 등을 통해 퇴직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추가로 전문 공무원 양성, 민간경력 채용을 통한 공무원 인력 확보방안 등 중장기적 대책을 강구할 것		
41	서로 다른 프로그램 혼용 지양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국제투자분쟁 중재수행 및 대응(1431-303)	주의	법무부
		지적사항	○ 법무부는 “국제투자분쟁(ISDS) 제소에 따른 중재수행 및 대응사업”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본 세부사업(1431-303)과 프로그램이 전혀 다른 ‘국제법무국 기본경비(7011-266)’의 일반수용비(210-01) 예산을 별도의 이용절차 없이 본 사업(1431-303)의 예산과 함께 집행하였음 - 서로 다른 프로그램의 예산을 법률상 이용절차 없이 임의로 혼용하여 집행할 경우, 「국가재정법」이 예산 편성·집행의 효율성·책임성·투명성 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장·관·항 상호 간 예산의 이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한 취지가 무색해지며, 나아가 국회의 예산안 심의·확정권 등을 침해할 소지가 있음		
		시정요구사항	○ 법무부는 장·관·항 및 사업 간 구분을 무시하고 이·전용 등 절차 없이 예산을 혼용하여 집행하는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42	교정시설 기관별 예산안 및 세부 사업명세서 지연제출 시정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총괄	시정	법무부
		지적사항	○ 2024년 결산 심사과정에서 교정본부에 각 구치소·교도소별 2024년 예산안 및 세부 사업명세서를 요구하였으나, 교정본부는 실제 기관별 예산안 및 세부 사업명세서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함 - 소관 기관의 자료제출 거부 또는 거짓 자료제출은 국회의 예·결산심사 권한을 형해화하는 것임 - 실제로 교정시설 기관별 예산안 및 세부 사업명세서가 부재할 경우 이는 각 기관의 독립적 운영에도 불구하고 재정집행의 투명성·책임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므로 이에 상응하는 조치가 필요함		
		시정요구사항	○ 법무부는 자료 요구에 대하여 이미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지연 제출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		
43	교정본부의 결산자료 지연제출 시정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총괄	시정	법무부
		지적사항	○ 교정본부가 법사위원의 결산 관련 자료제출요구에 응하지 않아 국회의원의 피감기관에 대한 결산업무를 방해하는 것에 대한 징계가 필요함 - 본 위원회의 법무부 교정본부에 대한 “2016년부터 2024년까지 배정받은 예산의 사용 내역 및 연도별 과밀률 등 과밀수용 문제의 해결여부”, “2024년 서울·수원구치소의 비목별 집행내역 자료” 등 자료제출 요구에 대하여 답변 및 자료제출이 없음		
		시정요구사항	○ 법무부는 국회의원의 피감기관에 대한 원활한 결산심사 업무를 위하여 요구자료를 지연 제출하지 않도록 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44	교정시설 과밀수용 문제 해결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교정시설장비운용 및 현대화(1531-302)	시정	법무부
		지적사항	○ 교정본부는 과밀수용 문제 해결을 위해 2016년부터 2024년까지 약 200억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으나, 과밀수용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음(평균 수용률 126.8%, 여자수용자의 경우 138.9%) - 본 위원의 법무부 교정본부에 대한 “2016년부터 2024년까지 배정받은 예산의 사용 내역 및 연도별 과밀률 등 과밀수용 문제의 해결여부” 등의 자료제출 요구에 대하여 답변 및 자료제출이 없어 해당 예산의 사용처가 불분명함		
		시정요구사항	○ 법무부는 교정시설 과밀화 문제 해결을 위하여 8년간 약 200억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으나 해당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였는바, 향후에는 관련 예산 집행을 통하여 교정시설 과밀화 문제를 해결할 것		
45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예산 이·전용 시정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교정시설장비운용 및 현대화(1531-302)	시정	법무부
		지적사항	○ 교정시설 확충이 필요하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예산을 전용하여 상용직 근로자의 퇴직금으로 사용한 것은 해당 사업 목적·용도에 부합하지 않은 집행임 - 이에 더해, 교정본부는 해당 이·전용 금액의 구체적 사용 내역에 대한 본 위원의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 자료를 제출하지 않음		
		시정요구사항	○ 법무부는 교정시설 과밀화 문제 해결을 위한 예산을 해당 사업을 위하여만 집행하여 등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과다한 예산의 이·전용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46	비목에 맞는 예산집행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교도소 행정지원(1531-300)	제도개선	법무부
		지적사항	○ 대구교도소 개청식 행사 대행용역을 위한 4,900만원을 일반용역비가 아닌 일반수용비로 집행하였음 - 정부 예산편성지침은 “통상적인 조직 운영에 소요되는 기본적인 행정사무비”는 일반수용비(210-01목)로, “기관의 업무추진 과정에서 전문성이 필요한 행사 운영 등을 용역계약을 통해 대행시키는 비용”은 일반용역비(210-14목)로 편성·집행하도록 함 - 대구교도소 이전 개청식은 전문성이 필요한 비정기적인 행사라는 점에서 행사 대행용역을 일반용역비 예산으로 편성 및 집행할 필요가 있음		
		시정요구사항	○ 법무부는 교도소 이전 개청식 등 전문성을 요하는 행사를 용역계약 등을 통해 대행시킬 경우 “일반수용비”가 아닌 “일반용역비” 비목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도록 개선할 것		
47	일부 교도소 공무직 휴게실 리모델링 사업 지연 개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교도소 행정지원(1531-300)	주의	법무부
		지적사항	○ 광주·의정부교도소 휴게실 리모델링 예산 4억 8,600만원 중 1억 8,400만원, 휴게실 물품구입을 위해 편성한 2억 600만원 중 8,900만원을 불용함 - 두 교도소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위치함에도 법무부가 이를 사전에 파악하지 못해 지자체 사전승인 절차를 거치지 못하였고, 이로 인해 리모델링 사업에 착수하지 못함		
		시정요구사항	○ 법무부는 향후 공무직 휴게실 리모델링 사업을 포함하여 다수 교정기관이 포함되는 시설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법령상 제한 등을 사전에 면밀히 파악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광주·의정부교도소의 사업승인 절차 등을 조속히 추진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48	노후 교정시설 예산 확보방안 마련 및 의료인력 확충을 통한 예산 초과집행 방지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교정시설 수용관리 및 공공요금(1532-300)	제도개선	법무부
		지적사항	○ 교정시설 수용인원 및 1일 평균 수용률이 증가하여 의료비, 호송여비, 유튜브비 예산 등이 초과집행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교정시설 1일 평균 수용인원 : ('22)51,117명→('23)56,577명→('24)61,366명 1일 평균 수용률 : ('22)106.9%→('25.5.)124.3% - 재소자 진료 인원 : ('20)24,520명→('22)27,388명→('25)34,935명 - 의무관 현원 : ('22~ '23) 84명→('24) 94명, 2024년 기준 충원율 : 79.6% - 수용자 외부 의료시설 이용 건수 : ('20)37,101건→('24)49,175건		
		시정요구사항	○ 법무부는 의무관 보수 현실화, 전공의 조기확보 등 의무관 처우 개선을 통해 의료인력을 확충하고, 고령·질병 수용자 증가 및 노후화된 교정시설 문제 해결을 위하여 교정시설 의료 및 예산 체계의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49	심리치료 업무지침에 부합하도록 교정시설 내 심리치료 인력 확보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교정교화(1532-301)	제도개선	법무부
		지적사항	○ 수원·인천·서울남부구치소, 춘천·원주교도소 등 교정기관 심리치료팀 구성인원 또는 기준이 「심리치료 업무지침」(법무부 예규)상 인원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교정기관이 다수 존재함 - 「심리치료 업무지침」에 따른 심리치료팀 구성 인원 : (대형기관) 7명 이상, (중형기관) 6명 이상, (소형기관) 5명 이상		
		시정요구사항	○ 법무부는 심리치료 업무지침상 심리치료팀 구성기준을 충족하도록 상담전담 직원을 충원·배치하고, 외부전문가 상담을 활성화하는 등 심리치료 업무지침에 부합하는 교정·교화제도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50	인건비 예산의 과도한 이·전용 지양 및 교정직 공무원 충원을 위한 노력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교도소 운영 인건비(총액, 7002-103)	제도개선	법무부
		지적사항	○ 법무부는 2024년 예산 집행과정에서 347억 6,500만원을 이·전용하고 63억 1,900만원을 불용하는 등 매년 200~400억원 대의 연례적인 인건비 예산 미집행이 발생하고 있음 - 연도별 이·전용 및 불용액(백만원): ('22)40,946→('23)26,483→('24)41,085 ○ 교도관 1인당 수용자 수가 2021년부터 매년 증가하고 있으므로, 인건비 이·전용 및 불용 최소화를 위하여, 처우개선 등 교정직 공무원 확보를 위한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시정요구사항	○ 법무부는 법무부 내부에서 논의된 교정직 공무원 확충방안 관련 보고서 등의 자료를 제출하고, 교정기관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 예산편성 시 인사현황을 면밀히 반영하여 미집행액의 과도한 이·전용을 지양하며, 부족한 교정직 공무원 충원을 위한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51	소년원 출원생의 사회정착률 증가 방안 강구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소년원생수용(1632-300)	제도개선	법무부
		지적사항	○ 최근 소년원 신규 수용인원이 급증하고 소년원 출소 후 재입원 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므로, 청소년자립지원기관에 대한 인지도 제고 등 소년원 출원 후의 사회정착률 증가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소년원 출원 후 1년 이내 재입원 비율: ('21)4.7%→('22)8.2%→('23)10.4% - 소년원 출원 후 무의탁소년 보호·지원을 위한 청소년자립생활관의 평균 입주율은 50%대에 머물러 있는데, 이는 청소년자립생활관에 대한 인지도 자체의 부족 및 부정적 인식에 기인함.		
		시정요구사항	○ 법무부는 소년원 출원 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청소년자립지원기관에 대한 인지도 제고 등 소년원 출원 후의 사회정착률 증가 방안을 강구함으로써 소년범죄 재범률을 감소시킬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52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내 의무관 정원 미확보 문제 해결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소년원생수용(1632-300)	제도개선	법무부
		지적사항	○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에서 근무하는 의무관의 정원 대비 현원이 부족하여 임상연 구비가 불용되었는바,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내 의무관 정원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최근 5년간 충원율은 60% 이하로, 특히 제주소년원의 의무관 현원은 0.5명으로, 시간 제 의무관이 1일 4시간 홀로 근무하고 있음(2025.5. 기준).		
		시정요구사항	○ 법무부는 제주소년원 의무관 등의 조속한 충원대책을 시행하고, 의무관 처우개선 등 인력충원을 위한 종합적 대책 마련을 충실히 검토할 것		
53	갱생보호사업에 대한 직접지출 금액 규모 확대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갱생보호활동(1633-300)	제도개선	법무부
		지적사항	○ 갱생보호기금의 수입 대비 지출액이 현저히 적어 매년 기금이 누적되어 기금의 규모 가 증대되고 있음 - 갱생보호기금은 「보호관찰법」에 따라 1995년 8월부터 갱생보호사업의 추진에 필요 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 설치하는 기금으로, 기금운용수 익금, 사업수입금 및 기부금으로 조성됨 - 2024년의 경우 109억 7,600만원의 수입 중 29억 500만원만을 갱생보호사업에 지출하 였고, 80억 7,100만원을 이월함 - 지출한 금액 중 직원 관사 구입(6,000만원), 공단 직원 퇴직금(3억원), 공단 소유 빌딩 관련 관리비(4억 1,500만원) 등은 갱생보호사업에 직접 지출된 금액으로 보기 어려움		
		시정요구사항	○ 법무부는 갱생보호기금의 이월금 규모가 매년 증대되어 기금이 누적되고 있으므로, 기 금으로부터 갱생보호사업에 직접 지출되는 규모를 확대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54	국립법무병원 의료인력 충원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치료감호자 수용관리(1634-300)	제도개선	법무부
		지적사항	○ 국립법무병원 정신과의사의 경우 법령상 정원대비 현원이 부족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고, 임상심리사·작업치료사 등 기타 의료인력의 경우 재활치료 연인원 대비 부족한 인원수를 보임 - 「정신건강증진법 시행규칙」상 의사 1인당 입원환자 60명이 기준이나, 2024년 국립법무병원 정신과 의사 1인당 환자 수는 118명임 - 2024년 재활치료 참여 연인원 11,781명이나, 이를 담당하는 임상치료사·작업치료사·사회복지사는 13명임		
		시정요구사항	○ 법무부는 국립법무병원 정신과 의사를 포함한 의료인력 충원이 이루어지도록 개선할 것		
55	위기상황자 심리치료비 지원사업 예산 사전 편성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보호관찰활동(1635-300)	제도개선	법무부
		지적사항	○ 법무부는 2024년 예산으로 치료명령 대상자 심리치료비 지원을 위한 일반수용비 1억 9,1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산액을 초과한 3억 1,500만원을 집행하고(집행률 164.7%), 위기상황자 1인당 지원액이 2023년 12만 4,000원에서 2024년 77만 5,500원으로 크게 증가함 - ('23) 위기상황자 57명에게 약 707만원, ('24) 198명에게 약 1억 5,355만원 지급		
		시정요구사항	○ 법무부는 치료명령 대상자 중 심리치료비 지원 대상이 되는 위기상황자 수의 합리적 추계를 바탕으로 적정규모의 예산을 사전에 편성하고 안정적으로 추진·집행하도록 개선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56	학생자치법교육 운영사업 위탁대금의 일반용역비 편성·집행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법질서 준수 및 법교육 활동(1636-304)	제도개선	법무부
		지적사항	○ 학생자치법 교육 운영사업 중 프로그램 외부 기관 위탁비용 2,000만원을 일반용역비가 아닌 일반수용비로 집행하였음 - 정부 예산편성지침은 “통상적인 조직 운영에 소요되는 기본적인 행정사무비”는 일반수용비(210-01목)로, “기관의 업무추진 과정에서 전문성이 필요한 행사 운영 등을 용역계약을 통해 대행시키는 비용”은 일반용역비(210-14목)로 편성·집행하도록 함		
		시정요구사항	○ 법무부는 해당 사업을 외부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하는 사업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학생자치법 교육 운영 예산을 일반용역비로 편성·집행하도록 개선할 것		
57	포상금 용도에 사용된 기타운영비 내역 전수 조사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법무연수원 기본경비(총액, 7018-204)	제도개선	법무부
		지적사항	○ 2024년 법무연수원의 기타운영비 집행내역에는 업무관련성이 불명확한 격려 목적에 집행하거나, 분기별로 지속적·정기적으로 격려금을 지급하는 등 지침에 맞지 않게 예산을 집행하고 있음.		
		시정요구사항	○ 법무부는 기타운영비(210-16) 지급 사례의 상세 내역을 제출하고, 포상 목적인 경우 해당 예산을 포상금(310-03)으로 편성·집행하도록 개선할 것		

나. 법제처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	총액인건비 비대상 경비에서 총액인건비 대상 경비로의 전용 재발 방지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인건비(총액인건비대상)(1001-100)	주의	법제처
		지적사항	○ 법제처는 2024년 법령정보제공, 세계법제정보서비스, 법령심사지원 등 총액인건비 비대상사업들에서 상용임금, 일용임금 등 인건비성 경비를 인건비 사업의 보수(110-01)로 9,150만원 전용하였는데, 이는 「2024년도 총액인건비제 세부 운영지침」의 취지에 맞지 않음. ○ 「2024년도 총액인건비제 세부 운영지침」은 ‘총액인건비에 포함되지 않은 경비로부터 총액인건비 대상 경비로의 이·전용과 예비비의 사용 등을 통한 총액인건비 규모의 증액은 원칙적으로 할 수 없다’고 규정		
		시정요구사항	○ 법제처는 향후 총액인건비에 포함되지 않는 경비로부터 총액인건비로의 이·전용을 금지하는 총액인건비제 운영지침의 취지에 맞지 않는 집행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2	기타직보수 연례적 전용 지양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인건비(총액인건비대상)(1001-100)	주의	법제처
		지적사항	○ 법제처는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기타직보수(110-02목) 수요(채용후보자 보수 지급)가 발생함에 따라 보수(110-01목) 중 4,700만원을 자체 전용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으나, 2021년부터 유사한 사유로 인한 기타직보수의 전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2024년에는 5급 경력채용자 4인의 교육기간 임금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지 않아 기타 직보수가 부족하였던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 4인의 채용은 법제처가 2024년 예산 요구안을 기획재정부에 제출(2023년 5월 31일)하기 전인 2023년 4월에 이미 정해져 있는 사안이었음.		
		시정요구사항	○ 법제처는 인사충원 등 인사계획을 면밀히 세워 기타직보수의 이·전용을 지양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3	법령해석 회신율 및 신속성 제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기관운영기본경비(1011-250)	제도개선	법제처
		지적사항	○ 법령해석 처리·회신율이 2021년 50.9%에서 2024년 41.1%로 최근 4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하며, 60일 이상 소요 안건이 전체 회신 건의 55.7%에 달하는 등 회신의 신속성이 미흡함. - 최근 4년간 법령해석 회신율: ‘21년 50.9%, ’ 22년 46.4%, ‘23년 41.5%, 24년 41.1%		
		시정요구사항	○ 법제처는 법령해석의 회신율과 신속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4	국외현장학습을 위한 경비 적정 비목 집행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기관운영기본경비(1011-250)	제도개선	법제처
		지적사항	○ 국내파견 교육훈련자의 국외 현장학습 프로그램 진행을 위해 일반수용비(210-01목)로 편성된 교육훈련비 중 1,393만원을 국외교육여비(220-03목)로 연례적으로 전용함.		
		시정요구사항	○ 법제처는 국내파견 교육훈련자의 국외 현장학습 경비를 국외교육여비로 편성·집행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5	도식화의 효과성이 높은 조문을 선정하여 시각 콘텐츠의 내실화 도모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법령정보제공(1031-300)	제도개선	법제처
		지적사항	○ 콘텐츠의 양적 확대과정에서 일부 시각화가 어려운 조문에 대하여 편집만 다르게 하여 소개하거나 해당 법령에서 시각화가 불필요한 조문까지 그림을 추가하는 등 법문 내용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 제고라는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대상으로 확대되는 경향이 있음. ○ 복잡한 조문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식화가 도움이 되지 않거나 단순한 내용으로 도식화 필요성이 떨어지는 조문에도 그림을 삽입하여 별도 콘텐츠를 제공하는 방식은 적절하다고 보기 어려움.		
		시정요구사항	○ 법제처는 한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제공 서비스 추진과정에서 사업의 취지와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감안하여 도식화의 효과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되는 조문을 신중하게 검토하여 선정하고 콘텐츠별 내실화를 도모하도록 노력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6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서 비스 법령 개정 적시 반영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서비스(1031-302)	제도개선	법제처
		지적사항	○ 생활법령정보서비스에서 제공하는 법령정보 중 법령이 개정되었음에도 그 내용이 바로 반영되지 않아 국민에게 혼선을 주는 경우가 있음. ○ 법제처는 월단위로 법령정보를 업데이트한다고 하나, 중요 생활법령의 경우 개정을 적시에 업데이트하거나 공포 후 시행 전 법령의 개정을 사전적으로 안내할 필요가 있음. - 국회는 2023회계연도 결산 심사시 “개정 후 시행 전 법령에 대한 사전 안내 방안을 검토하라” 는 시정요구도 한 바 있음.		
		시정요구사항	○ 법제처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서비스에서 법령 개정을 적시에 업데이트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7	사업 목적에 맞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세미나 주제 선정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서비스(1031-302)	제도개선	법제처
		지적사항	○ 법제처는 매년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는데, 동 사업은 법률안 개정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취지가 아니고 현행 법령을 알기 쉬운 방식으로 국민에게 알리는 취지의 사업이므로 법령·조례의 개정방향을 논의하는 세미나 주제가 사업 목적과 맞지 않음. - 2024년 세미나 주제의 경우 “저출산 대응을 위한 법제개선 방안 연구”, “지역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맞춤형 생활조례정보의 방향”으로, 법령이나 조례의 개정 방향을 논의하고 있음.		
		시정요구사항	○ 법제처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세미나를 생활법령정보 서비스 운영과 관련 있는 주제로 선정하고 서비스 개선방안에 대하여 논의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8	법령입법자문의 편중 지양 필요 등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법령심사지원(1032-300)	제도개선	법제처
		지적사항	○ 분기별 전문가 자문료 집행 실적을 보면, 1분기 1건, 2분기 2건, 3분기 7건, 4분기 8건으로 전체 예산의 약 82%를 하반기에 집행함. ○ 세법 전공 자문위원에게 ‘항공안전법 시행령 관련 검토’를 자문하는 등 전문분야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실적이 있음.		
		시정요구사항	○ 법제처는 전문분야에 맞는 자문위원에게 자문을 구하고, 연중 편중된 자문을 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9	입법지원사업의 실효성 확보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법령심사지원(1032-300)	제도개선	법제처
		지적사항	○ 법제처의 입법지원이 입법예고 단계까지 이어지는 비율은 2021년 32.9%, 2022년 33.7%, 2023년 22.2%에서 2024년 17.4%로 감소하고 있어 법령입법지원의 실효성이 충분하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 시행령도 마찬가지로 2021년 75.2%, 2022년 77.8%에서 2024년 45.4%로 감소하고 있으며, 시행규칙 역시 2021년 83.7%에서 2024년 44.8%로 감소함.		
		시정요구사항	○ 법제처는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입안 지원사업의 실효성 확보 방안을 마련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0	알기 쉬운 법제 구축 사업의 실효성 확보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법제정비(1032-301)	제도개선	법제처
		지적사항	○ 2023년부터 시행중인 ‘읽기 쉬운 법령문장 만들기’ 는 연구용역으로 발굴한 문장 정비안 중 최종 정비안으로 선정되는 비율이 상당히 낮고, 실제 개정 완료된 실적도 미흡함. - 2023년의 연구용역 3건을 통하여 연구기관이 발굴한 문장 정비 건수는 총 1,976건이었음. 이 중 법제처가 정비 필요성이 있다고 보아 소관 부처에 정비안 초안을 송부한 건수가 533건(27%), 이를 소관 부처에서 수용하여 선정된 최종 정비안의 건수가 323건(16.3%)임. 이 323건 중 개정이 완료된 건수는 2025년 6월말 현재 18건(0.9%)에 불과함. - 2024년의 경우에도 연구용역으로 발굴한 1,646건 중 법제처가 선정한 건수는 392건(23.8%), 이 중 부처가 수용한 최종 정비안 건수는 211건(12.8%)에 불과하고, 아직 정비 실적은 없음. ○ 최종 문장정비안의 내용에서도, 문장의 조사를 바꾸거나 띄어쓰기를 추가하는 등 경미한 수정만을 하고 있어 사업의 취지에 맞지 않음.		
		시정요구사항	○ 법제처는 알기 쉬운 법제 구축 사업의 실효성 및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1	입법영향분석 실효성 확보 방안 마련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행정법제 혁신(1032-302)	제도개선	법제처
		지적사항	○ 법제처가 2024년에 실시한 3건의 입법영향분석의 결과 제시된 8건의 개선과제 중 2건만이 정비되었고, 이 중 법령 개선사항이 아닌 행정적 개선 사항을 제시하는 경우도 1건 있었음. - 행정적 제도개선은 법령에 관한 분석이라기보다는 정책에 대한 분석 결과에 가깝고, 이는 각 부처에서 실시하는 제도개선과제 발굴을 위한 연구용역과 차별화되기 어려우며 정책을 직접 집행하고 있는 소관 부처에서 수행하는 것이 적절할 가능성도 있음. ○ 입법영향평가는 타 연구용역(법제처 평균 4,729만원)에 비해 평균 용역금액(8,733만원)이 훨씬 높음에도 하나의 용역에서 두세 건의 개선과제밖에 도출되지 않으며, 소관 부처에서 개선과제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정책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음.		
		시정요구사항	○ 법제처는 향후 입법영향분석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2	AI 환각 현상의 감소 및 대응방안 강구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법제업무정보화추진(1033-500)	제도개선	법제처
		지적사항	○ 자연어를 활용한 생성형 언어모델 기반의 AI 법령정보서비스의 경우, AI 환각 현상으로 인하여 허위 정보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의 유포로 이어질 수 있고, 이는 공적 책임의 문제도 발생시킬 가능성이 큼. - 검색 시 하단부에 “검색결과는 참고용으로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문구를 기재할 수 있으나, 잘못된 법령정보가 제공된 경우의 위험성을 대처하는 방안으로는 미흡한 것으로 보임.		
		시정요구사항	○ 법제처는 생성형 언어모델 기반의 법령정보서비스 구축에 있어 AI 환각 현상을 줄이고, 해당 현상의 발생 시 대응방안을 강구할 것		

다. 감사원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	성과지표 추가 개발 등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성과보고서	제도개선	감사원
		지적사항	○ 감사원은 프로그램 전략목표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공직사회 소통·지원도 필요”라고 설명하나, ‘정치감사·표적감사’ 등에 따른 “감사원에 대한 국민 신뢰도 훼손”에 대한 언급은 없음. ○ 감사활동의 경제적 성과는 감사결과 조치금액과 감사결과에 따른 기대효과의 합으로 측정되는데, ‘기대효과 금액’의 세부항목의 내용이 재정관리제도 개선의 효과나 국민안전 관련 감사활동의 성과를 반영하기에 모호하고 각 성과지표의 세부 항목별 달성치 미공개로 인해 평가·환류가 곤란함.		
		시정요구사항	○ 감사원은 기관의 독립성, 중립성 및 국민 신뢰도 제고에 관한 전략목표 및 성과목표의 추가 개발 방안을 마련하고, 경제적 성과로 환원이 어려운 제도개선 등을 감사활동의 성과로 측정할 수 있도록 대체지표 개발 등 성과관리의 취지에 맞게 감사활동의 성과를 공시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2	감사원 소관 결산보고서 작성 시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결산보고서	제도개선	감사원
		지적사항	○ 국회에 제출된 2024회계연도 감사원 결산보고서상 재무제표의 재정상태분석에 다음과 같이 오류가 확인됨. - 감사원은 2023회계연도 임차보증금 3억 7,000만원을 유동자산으로 과다계상하고 비유동자산은 해당 금액만큼 과소계상하였으며, 2024회계연도에도 임차보증금 2억원을 유동자산으로 과다계상하고 비유동자산은 해당 금액만큼 과소계상하였음.		
		시정요구사항	○ 감사원은 소관 결산보고서 작성시 재무제표 상에서만 내용 확인이 가능한 임차보증금 계상 등에 있어 오류가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3	상용임금 및 일용임금 예산 적정 편성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기본경비(1111-251)	제도개선	감사원
		지적사항	○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매년 상용임금 예산을 감액해 일용임금의 증액 재원으로 조달함. ○ 이에 대해 감사원은 무기계약직 결원 발생 시 일용직을 우선 투입한 결과라고 설명하나, 위 결원을 일용직으로 보충하는 것은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상용임금 편성 취지에 맞지 않음. ○ 또한 감사원은 상용임금 미집행에 따른 복리후생비 집행잔액을 특근매식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등을 집행하는 데 충당함.		
		시정요구사항	○ 감사원은 상용임금 비목에 편성된 예산을 일용임금으로 조정하여 집행하는 방식을 지양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4	결산검사 시 세수결손에 대한 검사 및 시정요구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감사활동경비(1131-303)	시정	감사원
		지적사항	○ 감사원은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보고서에서 초과세수 문제를 상세하게 검토하고 기획재정부에 주의 및 개선방안을 요구하였으나,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보고서에서는 세수결손이 발생하였음에도 세수추계에 대한 별도의 검토를 하지 않았음. ○ 국회는 2023회계연도 결산심사시 세수부족 상황에 대한 검토와 국회 보고를 시정요구사항으로 의결했음에도, 감사원은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시 관계부처에 대한 구체적인 시정요구를 제시하지 않고 권고 수준으로 종결함.		
		시정요구사항	○ 감사원은 2023·2024회계연도에 발생한 세수 부족에 대해 재검토하고, 관계 부처에 대한 조치 등 그 결과를 소관 상임위에 보고할 것 ※ 다만, 이 시정요구는 국회법 제127조의2에 따른 감사요구가 의결되지 아니할 것을 전제로 함.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5	정보공개 거부처분에 따른 결산심사 곤란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감사활동경비(1131-301)	시정	감사원
		지적사항	○ 2022. 1. 1.부터 2022. 11. 25까지 감사원장(피고), 감사위원, 사무총장이 사용한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 관서업무추진비의 세부집행내역과, 같은 기간 감사원 출장비 세부 집행내역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감사원이 거부처분을 한 것이 위법하다는 판결이 확정되었음. (대법원 2025. 8. 14. 2025두33659 판결) ○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은 “해당 (정보공개를 위한) 작업에 시일이 상당 소요된다.” 라는 이유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국회의 결산심사가 불가능한 실정임.		
		시정요구사항	○ 감사원은 대법원 판결의 취지대로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 관서업무추진비 및 여비에 대해 국회의 실질적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용내역 등을 투명하게 공개·제출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6	국민감사청구제 도 관련 홍보비 초과 집행 지양 및 결정의 신속성 제고와 절차 고지 개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감사활동경비(1131-303)	제도개선	감사원
		지적사항	○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는 감사청구가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감사 실시 및 기 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지만, 2020년 ~ 2024년까지 총 143건의 청구 접수 건중 30일 이내 결정한 건수는 2건에 불과 ○ 또한, 같은 기간 감사원 규칙에 따라 60일 이내 감사를 종결한 건은 2건에 불과하며, 지연 사유를 공문으로 통지하지 않은 경우도 6건임. ○ 국민감사청구 관련 홍보비를 증액 조정하여 집행했지만, 이용률 증가 등 실질적 성과 로 이어졌다는 근거를 찾을 수 없음.		
		시정요구사항	○ 감사원은 국민감사청구 절차 지연을 최소화하고 절차 지연시 당사자에게 신속하게 고 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며, 관련 홍보비 등의 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적정 예산 을 편성하고 당초 예산 편성 범위를 초과한 집행을 지양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7	일반연구비 용역 과제 공개 확대 및 수의계약 비중 축소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감사활동경비(1131-303)	제도개선	감사원
		지적사항	○ 감사원은 「연구성과물 등의 공개에 관한 규정」에서 감사연구원에서 발행하는 정책연구 성과물만을 공개 대상으로 정하여 감사원이 집행하는 일반연구비 과제는 공개대상에서 제외하였고, 대신에 공개에 적합한 일반연구 과제를 선정하여 감사원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으나, 공개 건수는 2022년 7건에서 2024년 0건으로 감소하였음. ○ 또한, 감사원은 ‘일반 용역에 대해 수의계약을 줄이고 일반경쟁을 통해 계약을 체결할 필요’라는 2023회계연도 국회 결산 시정요구에 대해 경쟁입찰 가능 용역을 확인 후 확대할 예정으로 보고하였으나, 2024년에도 일반연구비를 통한 계약 14건 중 13건이 수의계약으로 체결됨.		
		시정요구사항	○ 감사원은 일반연구비로 수행한 과제의 결과를 적극적으로 공개하고, 계약시 수의계약 의존도를 낮추는 방안을 검토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8	법정기한 내 재심의 처리를 위한 제도개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감사활동경비(1131-303)	제도개선	감사원
		지적사항	○ 감사원이 2020 ~ 2024년까지 최근 5년간 처리한 재심의 중 법정 기한인 2개월 내에 처리된 비율은 10% 내외에 불과하고, 2024년은 처리건수 58건 중 51건이 기각·각하되는 상황에서 3건만 법정기한 내 처리되었음. ○ 감사원은 ‘재심의 청구 처리기간 단축 필요’라는 2023회계연도 국회 결산 시정요구에 대해 2023년 2월 재심의 신속처리 제도를 마련하였고 추가적인 제도개선 방안 확인 예정으로 보고하였으나, 위 신속처리 제도는 시정요구 이전부터 존재하였던 제도임.		
		시정요구사항	○ 감사원은 재심의 청구사건이 법정기한 내 처리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9	국내여비 예산의 타사업 이·전용 지양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감사활동경비(1131-303)	주의	감사원
		지적사항	○ 감사원은 ‘여비를 다른 사업에 충당하는 방식 개선과 여비 예산의 규모 재산정 필요’ 라는 2023회계연도 국회 결산 시정요구에 대해 향후 전용 최소화 및 실제 수요에 따른 예산 편성·운용 예정으로 설명하였으나, 2022 ~ 2024년 사이에도 연례적으로 국내여비 예산의 전용 등이 이루어졌음. - 특히 2024회계연도에도 국내여비에서 다른 비목 또는 세부사업으로 5억 1,400만원이 전용 및 세목·내역변경 되었는데, 2022년 3억원, 2023년 2억 5,800만원에 비해 크게 증가한 수치임.		
		시정요구사항	○ 감사원은 국내여비를 다른 사업에 충당하는 예산집행 방식을 개선하고, 적정규모를 재산정하여 실소요에 맞게 감액하는 등 연례적 이·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0	연중 계획변경에 따른 불용액 발생 지양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적극행정 지원(1131-304)	주의	감사원
		지적사항	○ 감사원은 연 3회 기준으로 편성된 “찾아가는 사전컨설팅”을 연 6회로 확대하면서, 하반기 여비 부족이 예상됨에 따라 내역변경을 통해 3,972만원을 증액하였음. ○ 그러나, 조직 개편 후 실시 계획변경 등으로 인해 증액 예산의 70% 이상인 2,974만원을 불용하였음.		
		시정요구사항	○ 감사원은 사전컨설팅 사업과 관련한 여비 집행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내역변경 및 불용을 최소화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1	사전컨설팅 처리기간 단축방안 마련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적극행정 지원(1131-304)	제도개선	감사원
		지적사항	○ 2024년 사전컨설팅 접수는 82건으로 2023년 76건 대비 7.9% 증가하였지만, 제도도입 시점인 2019년 101건에 비해서는 19% 감소한 상황임. ○ 사전컨설팅의 규정상 처리 기한은 30일 이내임. 2024년의 30일 내 처리율이 33.3%로 2023년 62.5% 대비 절반 수준이며, 2019년 53.7%에 비해서도 크게 감소하였음. 60일 이상 장기 처리 건수의 비율 또한 22.8%(13건)를 차지하고 있음.		
		시정요구사항	○ 감사원은 사전컨설팅의 적시성·실효성 제고를 위해 절차간소화 등 처리기간 단축방안을 모색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2	적극행정 지원 사례집 발간비 이월 및 연례적 수의계약 지양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적극행정 지원(1131-304)	제도개선	감사원
		지적사항	○ 2024년도 3건의 발간계약이 모두 10월 이후에 체결되었고, 그 중 ‘공공계약 실무가이드 2차 개정판’ 계약액 전액인 5,300만원이 이월되었음. ○ 또한, 최근 3년간 총 7건의 발간물 계약이 모두 수의계약에 의해 체결되었으며, 그 중 6건이 동일 기업과의 계약임.		
		시정요구사항	○ 감사원은 사고이월 방지를 위해 적극행정 지원 관련 발간 사업 추진 일정을 연초부터 체계적으로 계획·관리하고, 제한경쟁입찰 방식을 도입하는 등 수의계약 의존도를 낮출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3	공사비 예산의 효율적 편성·집행 및 목적외 사용 지양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노후시설 개보수 및 업무시설 정비(1133-309)	제도개선	감사원
		지적사항	○ ‘바닥 마감재 철거 후 재설치 공사’가 사전조사 결과와 달리 규모가 축소되어, 공사비 예산액 15억 700만원 중 예산 편성 당시의 목적에 적합한 집행액은 9억 3,200만원으로 집행률이 60% 수준임. ○ 집행되지 않은 공사비 금액 5억 7,500만원 중 4억 4,600만원을 자산취득비 1억원, 임차료 1억 4,500만원, 타 내역 사업을 위한 공사비 2억 100만원 등 다른 용도로 전용·조정하여 집행하였음.		
		시정요구사항	○ 감사원은 시설공사 등 사업에 대한 사전 조사를 정확히 하여 적정예산을 편성하고, 국회 확정 예산에 대한 전용 등 목적외 사용을 지양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4	OASYS 구축·운영 사업 지연에 따른 후속 일정 체계적 관리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전산운영경비(정보화, 1134-309)	제도개선	감사원
		지적사항	○ ‘차세대 OASYS 구축 사업’은 OASYS(감사원 업무포털시스템)의 노후화를 개선하고 변화된 IT 환경에 따라 업무 방식을 혁신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2024년에는 인프라를 구축하고, 2025~2026년에는 디지털 감사시스템 등의 소프트웨어를 구축할 예정이었음. ○ 당초 2024년 12월에 인프라 구축을 완료할 예정이었으나 과기부 대기업 참여제외 예외 인정 및 국정원 보안성 검토 등으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어 24억 2,400만원이 이월되고 준공 예정일이 2025년 5월로 연기되었음.		
		시정요구사항	○ 감사원은 정보시스템 구축 등 다년도 사업의 추진 일정을 충분히 검토하여 일정 지연으로 인한 예산 이월이 최소화되도록 하고, 이월된 후속 일정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5	국외업무여비 예산의 목적외 사용 시정 필요 등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국제교류협력강화(1135-322)	징계	감사원
		지적사항	○ 감사원장 등 5명은 2024. 6. 12.부터 21.까지 G20 감사원장회의 등 참석을 위한 공무국외출장 경비로 총 8,441만원을 집행하였음. - 위 사업은 감사원의 예산요구안에는 포함되었으나 기획재정부의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제외. 국회의 예산 심사 과정에서도 논의된 바 없음. - 감사원은 이로 인해 당초 국외업무여비 예산에 편성된 사업비가 부족해지자 타 사업(감사활동경비)에서 7,000만원을 전용하여 집행함. ○ 이와 같은 집행은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국가재정법」 제45조) 및 전용 제한(제46조제3항)의 취지에 반하여 부적절함.		
		시정요구사항	○ 감사원은 국회가确定的한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G20 감사원장 회의 참석 등 공무국외출장과 관련하여 「국가재정법」의 취지를 위배하여 국내여비를 국외업무여비로 전용하여 집행하기로 최종 결정한 자를 징계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6	국회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재검토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2023회계연도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제도개선	감사원
		지적사항	○ 감사원은 ‘재심의 청구 처리기간 단축 필요’라는 시정요구에 대해 2023년 2월 재심의 신속처리 제도를 마련하였고 추가적인 제도개선 방안 확인 예정으로 보고하였으나, 위 신속처리 제도는 시정요구 의결 이전부터 이미 존재하였던 제도임. ○ 또한, 감사원은 ‘여비를 다른 사업에 충당하는 방식 개선과 여비 예산의 규모 재산정 필요’라는 시정요구에 대해 향후 전용 최소화 및 실제 수요에 따른 예산 편성·운용 예정으로 설명하였으나, 2022 ~ 2024년 사이 연례적으로 국내여비 예산의 이·전용이 이루어짐. ○ 그리고 감사원은 ‘일반 용역에 대해 수의계약을 줄이고 일반경쟁을 통해 계약을 체결할 필요’라는 시정요구에 대해 경쟁입찰 가능 용역을 확인 후 확대 예정으로 보고하였으나, 2024년에도 일반연구비를 통한 계약 14건 중 13건이 수의계약으로 체결됨.		
		시정요구사항	○ 감사원은 2023회계연도 결산에 관한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재검토하여 국회에 보고할 것		

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형	조치대상 기관
1	집행률 및 예산 편성의 정확성 제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총괄	주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지적사항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2024년 예산 불용률은 11.6%인 반면, 국가 전체 예산의 평균 불용률은 약 2% 내외인바, 공수처의 예산 불용률은 매우 높은 수준이며, 공판활동지원 예산의 불용률이 50%에 육박하고 있음에도 공수처는 매년 예산 증액을 요청하고 있음		
		시정요구사항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편성된 예산의 집행률을 제고하고 예산 편성에 있어 추계 정확성을 기하여 불용 예산을 최소화하도록 주의할 것		
2	예산 전용을 통한 신규 사업 수행 부적정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정보화체계 구축 및 운영(1031-300)	제도개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지적사항	○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고도화 구축사업 추진을 위한 정보시스템 마스터플랜 수립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수사지원 및 수사일반의 국내여비 예산 1억 1,000만원을 전용하였음 - 계획에 없던 사업 추진을 위해 타 사업의 예산을 전용하여 추진하는 것은 해당 예산을 편성된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집행하는 것이므로 국회의 예산심의 및 통제를 받지 않는 문제가 있음		
		시정요구사항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으므로, 계획에 없던 사업을 추진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3	수사·공소 관련 위원회 개최실적 제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수사지원 및 수사일반(1032-301), 공판활동지원(1033-301)	제도개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지적사항	○ 수사·공소 관련 각 위원회의 2024년도 집행현황을 살펴보면, 감찰위원회를 제외한 수사심의위원회, 영장심의위원회, 공보심의위원회 등 수사 관련 심의위원회의 집행률은 14.5%, 공소심의위원회의 집행률은 20.8%임 - 2024년 회의 개최실적은 심의 계획인 30회와 달리 개최횟수가 수사심의위원회 1회, 영장심의위원회 1회, 공보심의위원회 4회, 감찰위원회 2회, 검사징계위원회 2회로 도합 10회(약 34%)에 그쳤음		
		시정요구사항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수사·공소 관련 위원회 개최실적 및 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개최 계획수준을 수정하고 그에 맞춰 예산을 삭감하는 등 예산집행이 부진하지 않도록 개선할 것		
4	집행가능성 고려한 예산 편성 및 내부고발 활성화 방안 마련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수사지원 및 수사일반(1032-301)	제도개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지적사항	○ 소형 복합기 구매 계약이 2023년 3월 30일에 체결되었음에도, 형사사법절차에서 전자 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대비하기 위해 고속으로 스캔 가능한 OCR스캔시스템을 1대 임차하는 것으로 예산 편성했으나 전액 불용함 ○ 공수처는 특정범죄신고자, 증인, 내부고발자 등 신변보호관련 업무위탁비 및 내부고발자 포상금을 각 400만원, 4,650만원 편성하였으나 1건도 집행하지 않음. 내부고발 보호제도에 대한 별도의 홍보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서 내부고발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부족함		
		시정요구사항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적정 규모의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불용을 최소화하고, 내부고발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5	공수처 인력 충원 노력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공수처 운영 인건비(총액, 7001-100)	제도개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지적사항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국회는 2023회계연도 결산 심사 에서 검사 및 수사관을 안정적으로 충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시정요구하 였으나, 검사 임명의 지연 등으로 인하여 공수처의 정원대비 현원이 부족하고 인건 비 예산이 불용되었음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2022년 이후 총 6,007건의 사건접수 중 공소 제기는 4건에 불 과하는 등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2021년부터 2024년까지 33명이 퇴직하는 등 높은 퇴 직률을 보인다는 점에서 실적대비 과도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음		
		시정요구사항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국회의 시정요구 취지를 고려하여 안정적으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실적대비 과도한 인건비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므로 제도 전 반에 대해서 재검토할 것		
6	연구비 집행을 제고 및 규정 취지에 맞는 집행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공수처 운영 기본경비(비총액, 7011-250)	제도개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지적사항	○ 연구용역 절차 지연으로 일반연구비로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1억 200만원을 불용(집행률 32%)하였고, 정책연구비로 2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4,500만원을 이 율하고 1억 1,000만원을 불용(집행률 29.5%)하였음 ○ 매년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하고 있음에도 이를 위해 세목변경을 하고 있음. 또한, 연구용역 미발주 등의 상황에서 이를 심의하기 위한 정책연구심의위원회는 16차례 진 행하였으며, 모든 심의를 서면심사를 통해 집행하였는데 이는 위원회 개의요건인 ‘위 원 출석’ 을 서면으로 대체한 것임		
		시정요구사항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연구용역 과제 선정 후 기본계획을 신속하게 수립하여 지연되 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정책연구심의위원회를 규정 취지에 맞도록 운영할 것		

마. 헌법재판소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형	조치대상기관
1	인건비 집행률 제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인건비(1001-150)	제도개선	헌법재판소
		지적사항	○ 헌법재판소의 2024년 인건비 사업 불용률은 4%로, 전년 대비 1.3%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건비 집행률 부진은 과거 국회 예결산 심사 시 지속적으로 지적받은 문제임. - 2024회계연도 정부 전체 일반회계 인건비 불용률은 1.2%임.		
		시정요구사항	○ 헌법재판소는 인력충원에 대한 면밀한 계획을 수립하고, 헌법연구관의 비서실장·공보관 겸임을 계속 유지할 경우 예산 편성 시 이를 반영하여 인건비 집행률을 제고할 것		
2	헌법연구관의 직위 겸임 관행 지양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인건비(1001-150)	제도개선	헌법재판소
		지적사항	○ 헌법연구관이 인사관행적으로 비서실장·공보관의 직위를 겸임함에 따라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연구관 본연의 연구 업무 수행을 저해하고 해당 보직의 전문성을 약화시키는 문제가 있음. - 2024년 헌법연구관의 비서실장·공보관 겸임에 따른 인건비 불용액: 2억 5,700만원		
		시정요구사항	○ 헌법재판소는 헌법연구관의 직위 겸임 관행을 지양하고, 비서실장 및 공보관 직위에 는 해당 직무에 적합한 전문 인력을 별도로 임용하는 등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형	조치대상기관
3	헌법연구관 결원으로 인한 업무 공백 최소화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인건비(1001-150)	제도개선	헌법재판소
		지적사항	○ 헌법재판소는 헌법연구관의 휴직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결원 보충이 가능함에도 6개월 이상 휴직자의 결원 보충을 하지 않아 조직 운영의 효율성과 업무 연속성을 저해함. - 2024년도 휴직·퇴직 등에 따른 결원에 따른 불용액: 8억 1,300만원 - 2024년도 일반직공무원 총 26명 중 휴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 인원: 23명		
		시정요구사항	○ 헌법재판소는 헌법연구관 휴직 등으로 인한 결원 발생 시 「국가공무원법」 제43조에 따른 파견 등 「헌법재판소법」 및 「국가공무원법」상 허용되는 대체 인력 충원 방안을 적극 활용하여 해당 부서의 업무 공백을 최소화할 것		
4	명예퇴직 시 특별승진 관련 제도 개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인건비(1001-150)	제도개선	헌법재판소
		지적사항	○ 현행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은 명예퇴직에 따른 특별승진임용 시 특별한 공적 여부에 대한 심사규정 및 명예퇴직 수당이 환수되는 경우 특별승진임용을 취소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음. - 정부는 2019년 「공무원의 명예퇴직에 따른 특별승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1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을 통해 특별승진임용시 특별한 공적여부에 대한 심사규정 및 명예퇴직 수당 환수시 특별승진임용 취소 규정 마련 - 국회, 법원, 선거관리위원회도 이후 「국회인사규칙」, 「법원공무원규칙」,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을 개정하여 명예퇴직 시 특별승진 관련 제도 개선 완료		
		시정요구사항	○ 헌법재판소는 명예퇴직 시 특별승진의 경우 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추후 명예퇴직금 환수 사유 발생 시 특별승진을 취소할 수 있도록 관련 규칙을 개정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형	조치대상기관
5	실소요 기반 예산 편성으로 직책수행경비의 집행을 제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본부기본경비(1011-250)	제도개선	헌법재판소
		지적사항	○ 본부기본경비 내 직무수행경비의 세목인 ‘직책수행경비(250-02)’는 조직관계법 또는 직제에 의한 직위(실·국·과장 등)를 보유한 자에게 지급하는 비용인바,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불용액이 발생함. - 최근 5년간 직책수행경비 불용액 현황 (2020년) 100만원, (2021년) 400만원, (2022년) 6,600만원, (2023년) 5,000만원, (2024년) 4,600만원		
		시정요구사항	○ 헌법재판소는 향후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예산안 편성 또는 심의 단계에서 직책수행경비의 실소요를 정밀히 파악하여 적정한 예산을 편성하고, 불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6	국선대리인 신청에 따른 선임을 제고 방안 마련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국선대리인보수 등(1031-300)	제도개선	헌법재판소
		지적사항	○ 국선대리인 신청 건수는 매년 약 1,000건 이상으로, 최근 5년간 신청 처리건수 5,014건인데, 국선대리인 선임건수는 700건으로 평균 선임률이 14%에 불과함. - 2024년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건수는 1,001건, 선임건수는 127건(선임률 12.7%)		
		시정요구사항	○ 헌법재판소는 국선대리인 선임 요건 등에 대한 충분한 사전 안내를 적극 실시하고, 신청 건수가 효과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 운영 방안을 마련하여 국선대리인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형	조치대상기관
7	국선대리인 사건의 인용률 제고 방안 마련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국선대리인보수 등(1031-300)	제도개선	헌법재판소
		지적사항	○ 국선대리인 사건 인용률(최근 6개년 평균 8.9%)이 헌법소원심판 선고사건 인용률(최근 6개년 평균 12.3%)에 비해 낮게 나타나고 있음. - 2024년 국선대리인 사건의 선고 건수 115건 중 인용된 사건은 12건(인용률 10.4%)으로, 2024년 헌법소원심판 선고 사건 인용률 12% 보다 낮음.		
		시정요구사항	○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에 대한 이해와 숙련도가 높은 국선대리인을 확보하고, 국선대리인 사건의 인용률 제고방안을 마련할 것		
8	참고인 연구비 등 사업의 활용률 제고 방안 마련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국선대리인보수 등(1031-300)	제도개선	헌법재판소
		지적사항	○ 최근 5년간 헌법재판소가 개별 사건에서 참고인을 지정하여 의견을 청취한 내역을 살펴보면, 특정 분야(법조인)로의 쏠림 현상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고, 전문분야 참고인 지정 시 전문분야 별로 한 명의 참고인을 지정하여 복수의 전문가 지정 비중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최근 5년간 20건의 사건에서 총 44명의 참고인의 의견을 청취하였는데, 참고인 44명 중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법조인이 23명(52.3%)		
		시정요구사항	○ 헌법재판소는 참고인 지정 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복수로 지정하여 활용하는 등 참고인 연구비 사업의 활용률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 제도가 실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형	조치대상기관
9	사건 처리의 신속성 제고 및 장기미제 사건의 관리를 위한 다양한 방안 마련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재판활동운영지원(1031-301)	제도개선	헌법재판소
		지적사항	○ 「헌법재판소법」 제38조는 헌법재판소는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결정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각하사건을 제외한 헌법재판의 평균처리기간은 약 725일으로, 180일을 4배 가량 상회하는 수준임. ○ 또한, 심판사건 처리 기간 지연이 장기 미제 사건의 증가로도 나타나고 있음. - 2020년 기준 2년 이상 경과한 미처리 사건은 201건이었으나, 2024년에는 426건으로 2배 이상 증가하였고, 4년 이상 경과한 사건도 55건 존재		
		시정요구사항	○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의 신속성 제고를 위해 조직·인력 등 다양한 측면에서 중장기적인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적정 수준의 헌법연구관을 확보하도록 노력하며, 사건의 경중, 난이도, 사회적 파급력 등을 고려한 사건 배정 체계를 마련하는 등 사건 처리의 신속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10	어린이 홈페이지 운영사업의 수행방식 개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본부운영지원(1032-302)	제도개선	헌법재판소
		지적사항	○ 어린이 홈페이지 운영 사업은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헌법 및 헌법재판 관련 영상·만화·동화·게임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함으로써 헌법과 헌법재판제도에 대한 어린이들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어린이날, 제헌절 등에 선물제공 등 이벤트를 개최하고 있는바, 이벤트를 개최한 달과 그 외의 달의 홈페이지 방문 건수에 현격한 차이를 보임. - 2024년 기준 방문건수가 가장 많은 달인 7월(518,386건)과 가장 적은 달인 2월(30,330건) 사이 약 17배의 차이		
		시정요구사항	○ 헌법재판소는 어린이 홈페이지 운영 사업의 특정 이벤트 기간 외에도 사업대상자의 지속적이고 자발적인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사업운영 방식을 강구하고, 실효성 있는 참여 유인 방안을 마련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형	조치대상기관
11	정책연구용역 사업의 수의계약 최소화 및 연구수행기관의 다변화 방안 마련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본부운영지원(1032-302)	제도개선	헌법재판소
		지적사항	○ 최근 5년간 수행한 정책연구용역 계약 현황을 살펴보면, 정책연구용역 수행 사업 7건 중 4건(57%)은 수의계약으로, 나머지 3건(43%)은 제한경쟁으로 수행하였고, 7건의 연구 중 4건은 한국헌법학회, 2건은 한국공법학회가 수행하여 특정 학회와의 계약 비중과 수의계약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시정요구사항	○ 헌법재판소는 정책연구용역을 실시함에 있어 적극적인 홍보 등을 통하여 수의계약 비중을 낮춰 경쟁입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정책연구용역 사업 수행기관 선정을 다변화할 것		
12	예산 편성 및 집행의 정확성 제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본부운영지원(1032-302)	제도개선	헌법재판소
		지적사항	○ 헌법재판소는 2024년에 지하 3층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기 이설공사를 위하여 4,4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는데, 실제로는 기존 별관 지하 3층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기 2대 중 1대를 본관 지하 1층으로 이설하고 추가로 4대의 완속충전기를 본관 지하 1층에 신규로 설치하였음. - 이에 따라 예산 편성 시 목적에 따라 이설되었어야 할 급속충전기 1대는 여전히 별관 지하 3층에 위치함.		
		시정요구사항	○ 헌법재판소는 확정된 예산을 그 편성 목적에 맞게 집행하도록 노력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기관
13	국외통신원 운영 사업의 활성화 방안 등 마련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헌법재판연구원운영지원(1033-303)	제도개선	헌법재판소
		지적사항	○ 최근 3년간 국외통신원 운영 사업의 예산과 그 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지속적으로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음. - 최근 3년간 불용액(불용률) 현황 (2022년) 150만원(41.6%), (2023년) 60만원(16.7%), (2024년) 180만원(50.0%) ○ 또한, 전체 31건의 국외통신원 위촉 건수 중 신규 위촉은 6건(19%)에 그치고, 대부분 3년 이상의 기존 국외통신원을 재위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 활동 중인 13기(2024.9.~2025.9.) 국외통신원의 경우 2명 지원에 2명이 신규 위촉됨에 따라 지원자가 전원 위촉(경쟁률 1:1)됨.		
		시정요구사항	○ 헌법재판소는 다양한 홍보 방안을 마련하는 등 국외통신원의 지원을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 직무 수행에 적합한 양질의 국외통신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기관
14	연임 헌법연구관 연수에 대한 관리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해외연수(1034-304)	제도개선	헌법재판소
		지적사항	○ 해외연수 사업의 내역사업인 연임 헌법연구관 연수 사업에 따른 해외연수보고서를 살펴보면 해당 국가의 연수목적에 따른 제도 설명이 대부분의 분량을 차지하고 있고 실제 연수 내용에 대한 부분이 거의 없음. ○ 또한,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법원의 경우 기한 내 해외연수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연수 비용의 일부를 환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한 규정이 없음. - 해외연수 사업의 내역사업인 연임 헌법연구관 연수 사업은 임명된지 10년이 지나 연임된 헌법연구관에게 연수의 기회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임.		
		시정요구사항	○ 헌법재판소는 연임 헌법연구관 연수 사업에 있어 해당 사업이 그 목적 및 취지에 맞게 운용될 수 있도록 하고, 해외연수보고서에 대한 내규를 보완할 것		
15	발간물 관련 특정업체에 대한 계약편중 완화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본부기본경비(1011-250), 헌법재판연구원기본경비(1011-251), 재판활동운영지원(1031-301), 본부운영지원(1032-301), 헌법재판연구원운영지원(1033-303), 국제교류(1034-305), 재판자료확충(1035-306)	제도개선	헌법재판소
		지적사항	○ 2024년 헌법재판소의 발간물 현황을 보면, 특정 두 업체와 다수의 계약을 체결하며 전체 계약금액의 60.94%에 해당하는 2억 1,269만원을 집행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제한경쟁입찰 2건을 제외한 나머지 계약을 전부 수의계약으로 체결하였음.		
		시정요구사항	○ 헌법재판소는 발간물 계약에 있어 관례적인 수의계약을 지양하고 특정업체에 대한 계약편중을 완화할 것		

바. 대법원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	이·전용 등 예산 변경 관행 주의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등기특별회계, 사법서비스진흥기금 공통				주의	대법원
		지적사항	○ 최근 3개년 예산의 이용, 전용, 내역변경, 세목조정, 기금운용계획변경 등 국회 예산 확정 이후 예산 변경 상황을 살펴보면, 2022년 179억 1,000만원, 2023년 344억 700만원, 2024년 438억 7,300만원으로 그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함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2	인건비의 과다한 이·전용 주의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일반 인건비(7001-151)					제도개선	대법원																		
		지적사항	○ 동 사업은 법관 및 법원공무원 등의 인건비를 지급하는 사업인데, 인건비 예산의 과다한 이·전용으로 국회예산안 심의·의결권을 형해화 함 ○ 인건비 외 특정사업 예산으로부터의 과다한 승인 이용을 지양해야 함 <2024년도 일반 인건비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table><tr><th rowspan="2">사업명</th><th colspan="5">2024년</th></tr><tr><th>예산액</th><th>이·전용 등</th><th>예산현액</th><th>집행액</th><th>불용액</th></tr><tr><td>일반 인건비</td><td>1,288,541</td><td>4,308</td><td>1,292,849</td><td>1,292,610</td><td>239</td></tr></table>							사업명	2024년					예산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불용액	일반 인건비	1,288,541	4,308	1,292,849	1,292,610	239	
		사업명	2024년																								
			예산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불용액																				
일반 인건비	1,288,541	4,308	1,292,849	1,292,610	239																						
시정요구사항	○ 대법원은 인력 운용 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여 향후 정확한 인건비를 편성하고, 예산의 이·전용을 최소화 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3	복리후생비 목적에 맞는 예산 편성 및 집행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복리후생비	시정	대법원																		
		지적사항	○ 2024년도 일반회계 복리후생비(210-12목)는 재판일반경비지원 등 12개 사업에 편성되어 있는데, 대법원은 기획재정부 집행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복리후생비 용도에 위반하여 직원 워크숍, 세미나, 체육행사 등 4개 사업에서 83건, 총 1억 4,980만원을 집행하였음 - 2023년도 결산 심사에서도 ‘주의’ 시정요구를 받은 바 있음 <2024년 복리후생비를 체육행사, 세미나 등에 집행한 사례> <table><tr><th>사업명</th><th>주요 내용</th><th>지출금액(원)</th></tr><tr><td>사법운영기본경비</td><td>체육행사, 사법정책연구원 워크숍, 사무국장세미나, 법관 워크숍 등</td><td>39,917,690</td></tr><tr><td>사법운영지원</td><td>신임법관 및 교수단 워크숍 등</td><td>14,065,200</td></tr><tr><td>사실심총실화</td><td>상사·노동법실무연구회 세미나 등</td><td>34,628,960</td></tr><tr><td>재판청구권실현</td><td>법원행정처 워크숍, 사법보좌관 정례 세미나, 법원도서관 춘계문화체육행사, 통일사법연구회 워크숍 등</td><td>61,189,130</td></tr><tr><td colspan="2">합 계</td><td>149,800,980</td></tr></table>			사업명	주요 내용	지출금액(원)	사법운영기본경비	체육행사, 사법정책연구원 워크숍, 사무국장세미나, 법관 워크숍 등	39,917,690	사법운영지원	신임법관 및 교수단 워크숍 등	14,065,200	사실심총실화	상사·노동법실무연구회 세미나 등	34,628,960	재판청구권실현	법원행정처 워크숍, 사법보좌관 정례 세미나, 법원도서관 춘계문화체육행사, 통일사법연구회 워크숍 등	61,189,130	합 계		149,800,980
		사업명	주요 내용			지출금액(원)																	
사법운영기본경비	체육행사, 사법정책연구원 워크숍, 사무국장세미나, 법관 워크숍 등	39,917,690																					
사법운영지원	신임법관 및 교수단 워크숍 등	14,065,200																					
사실심총실화	상사·노동법실무연구회 세미나 등	34,628,960																					
재판청구권실현	법원행정처 워크숍, 사법보좌관 정례 세미나, 법원도서관 춘계문화체육행사, 통일사법연구회 워크숍 등	61,189,130																					
합 계		149,800,980																					
시정요구사항	○ 대법원은 2023년도 결산 심사에서 ‘주의’ 시정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지침을 다시 위반하였으므로 예산을 집행한 담당자에 대해 시정조치할 것 ○ 대법원은 복리후생비가 기획재정부 집행지침에 명시된 용도에 맞게 편성 및 집행될 수 있도록 집행 관리를 강화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4	징계부가금의 체계적인 징수·체납 관리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징계부가금(56-564)					제도개선	대법원																		
		지적사항	○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액이 크고, 소멸시효 완성으로 불납결손처리 되는 사례가 있는 등 징계부가금의 징수·체납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 <2024년도 징계부가금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table><tr><th rowspan="2">사업명</th><th colspan="5">2024년</th></tr><tr><th>예산액</th><th>징수결정액</th><th>수납액</th><th>미수납액</th><th>불납결손액</th></tr><tr><td>징계부가금</td><td>－</td><td>1,062</td><td>11</td><td>1,045</td><td>7</td></tr></table>							사업명	2024년					예산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불납결손액	징계부가금	－	1,062	11	1,045	7	
		사업명	2024년																								
			예산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불납결손액																				
징계부가금	－	1,062	11	1,045	7																						
시정요구사항	○ 대법원은 징계부가금의 체계적인 징수 및 체납 관리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5	변상금의 적극적인 징수 관리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변상금(57-571)					주의	대법원																		
		지적사항	○ 2024년도 변상금의 징수결정액이 전년 대비 49억 9,800만원 증가하였고, 소멸시효 완 성으로 불납결손처리 되는 사례가 있으며, 미수납 금액도 상당한 규모임 <2024년도 변상금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table><tr><th rowspan="2">사업명</th><th colspan="5">2024년</th></tr><tr><th>예산액</th><th>징수결정 액</th><th>수납액</th><th>미수납액</th><th>불납결손 액</th></tr><tr><td>변상금</td><td>—</td><td>5,475</td><td>546</td><td>4,924</td><td>4</td></tr></table>							사업명	2024년					예산액	징수결정 액	수납액	미수납액	불납결손 액	변상금	—	5,475	546	4,924	4	
		사업명	2024년																								
예산액	징수결정 액		수납액	미수납액	불납결손 액																						
변상금	—	5,475	546	4,924	4																						
시정요구사항	○ 대법원은 변상금의 시효완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멸시효 중단 절차를 적극적으로 활 용하는 등 적극적인 징수 관리를 위해 노력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6	증인지원실 설치 예산의 실제 수요에 부합한 조정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재판절차비용지원(1143-403)				주의	대법원																													
		지적사항	○ 내역사업인 ‘증인지원실 설치 및 운영 사업’의 예산현액 19억 2,600만원 중 실제 증인지원실 설치에 사용된 예산은 제주지방법원(4,360만원), 평택지원(3,592만원) 등 2개소의 인테리어 공사비 등 총 7,952만원에 불과하고, 4억 1,000만원이 타 사업의 인건비 및 사업추진비 등으로 이전용되어 사업 본래 목적과 무관하게 집행되었음 <이·전용 금액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table><tr><th rowspan="2">구분 (일자)</th><th colspan="3">~ 에서</th><th colspan="3">~ 으로</th></tr><tr><th>세부사업</th><th>비목</th><th>금액</th><th>세부사업</th><th>비목</th><th>금액</th></tr><tr><td>승인전용 (2024.8.8.)</td><td>재판절차 비용지원</td><td>공사비 420-03</td><td>△310</td><td>재판일반 경비지원</td><td>사업추진비 240-01</td><td>310</td></tr><tr><td>승인전용 (2024.11.13.)</td><td>재판절차 비용지원</td><td>공사비 420-03</td><td>△100</td><td>재판일반 경비지원</td><td>구호및교정 비 320-06</td><td>100</td></tr></table>						구분 (일자)	~ 에서			~ 으로			세부사업	비목	금액	세부사업	비목	금액	승인전용 (2024.8.8.)	재판절차 비용지원	공사비 420-03	△310	재판일반 경비지원	사업추진비 240-01	310	승인전용 (2024.11.13.)	재판절차 비용지원	공사비 420-03	△100	재판일반 경비지원	구호및교정 비 320-06	100		
		구분 (일자)	~ 에서			~ 으로																															
세부사업	비목		금액	세부사업	비목	금액																															
승인전용 (2024.8.8.)	재판절차 비용지원	공사비 420-03	△310	재판일반 경비지원	사업추진비 240-01	310																															
승인전용 (2024.11.13.)	재판절차 비용지원	공사비 420-03	△100	재판일반 경비지원	구호및교정 비 320-06	100																															
시정요구사항	○ 대법원은 증인지원실의 신규설치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공사비는 감축하고 운영비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예산을 실제 수요에 맞게 조정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7	광역면접교섭 센터 설치 사업의 일반회계와 사법서비스진흥 기금 예산 병행 집행 방식 개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재판절차비용지원(1143-403)	주의	대법원
		지적사항	○ 광역면접교섭센터는 미성년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로 재판절차 진행 중 피해자나 증인 보호를 위한 ‘증인지원실’과는 목적·대상·법적 근거 등에서 구별되고, 면접교섭센터의 설치는 사법서비스진흥기금의 사법서비스 향상(1161-403) 세부사업에서 추진되고 있는데, 광역면접교섭센터 설치 예산을 일반회계 ‘증인지원실 설치 및 운영’ 내역사업 예산으로 편성·집행한 것은 서로 다른 성격의 사업을 하나의 사업으로 혼합해 운영한 것으로 예산집행의 일관성과 투명성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음 - 2024년 (구) 구리등기소에 설치된 광역면접교섭센터에 공사비 총 4억 1,806만원 집행 (리모델링 공사비 3억 2,063만원, 관급자재 구매비 9,743만원)		
		시정요구사항	○ 대법원은 증인지원실과 면접교섭센터와 같이 법적 근거가 다른 시설에 대해 예산항목을 명확히 구분하고, 기금 사업과 일반회계 사업을 구분 없이 병행 집행하는 방식을 개선하는 등 시정 조치를 강구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8	송달료 세부 집행계정 마련 및 추계 정확성 제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재판절차비용지원(1143-403)	제도개선	대법원
		지적사항	○ 대법원은 2024년 사건 수 추계를 112,545건으로 과소 예측하여 다른 세부사업으로부터 30억 2,600만원을 송달료로 자체이용 하였으나, 이용을 통해 증액된 예산 중 7,400만원을 일반수용비로 세목조정하였고 2억 6,200만원은 불용하였음 ○ 예산부족을 이유로 이·전용한 예산을 또다시 다른 비목으로 세목조정하고 불용하는 예산집행 구조는 송달료를 전기료 등 공공요금과 함께 혼합 집행하여 정확한 집행 내역을 파악할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에 따른 것임		
		시정요구사항	○ 대법원은 송달료와 공공요금 집행내역을 분리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세부 집행계정을 마련하고, 송달료 수요를 사건 수, 송달 건수, 건당 평균 송달비용 등 구체적 근거에 기반하여 예측하는 등 추계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9	진술조력인 제도 사업의 예산 편성 및 집행체계 정비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재판절차비용지원(1143-403)							주의	대법원																																								
		지적사항	○ 내역사업인 ‘진술조력인 제도’ 사업은 비상근 진술조력인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임에도 재판사무시스템을 통해 비상근 진술조력인 선정 건수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어 예산이 정확한 산출근거에 의해 편성되지 않음에 따라 예산집행이 연례적으로 저조함 <최근 4년간 진술조력인 제도 집행 현황> <table> <tr> <th>연도</th> <th>예산액 (백만원)</th> <th>집행액 (백만원)</th> <th>사건수 (건)</th> <th>소송관계인수 (명)</th> <th>1인당 기준금액 (만원)</th> <th>집행률 (%)</th> <th>비용액 (백만원)</th> </tr> <tr> <td>2021</td> <td>50</td> <td>2</td> <td>18</td> <td>19</td> <td>30</td> <td>4</td> <td>48</td> </tr> <tr> <td>2022</td> <td>50</td> <td>5</td> <td>23</td> <td>24</td> <td>30</td> <td>10</td> <td>45</td> </tr> <tr> <td>2023</td> <td>30</td> <td>7.8</td> <td>64</td> <td>71</td> <td>30</td> <td>26</td> <td>22.2</td> </tr> <tr> <td>2024</td> <td>30</td> <td>9</td> <td>73</td> <td>78</td> <td>30</td> <td>30</td> <td>21</td> </tr> </table>									연도	예산액 (백만원)	집행액 (백만원)	사건수 (건)	소송관계인수 (명)	1인당 기준금액 (만원)	집행률 (%)	비용액 (백만원)	2021	50	2	18	19	30	4	48	2022	50	5	23	24	30	10	45	2023	30	7.8	64	71	30	26	22.2	2024	30	9	73	78	30	30	21
		연도	예산액 (백만원)	집행액 (백만원)	사건수 (건)	소송관계인수 (명)	1인당 기준금액 (만원)	집행률 (%)	비용액 (백만원)																																										
		2021	50	2	18	19	30	4	48																																										
2022	50	5	23	24	30	10	45																																												
2023	30	7.8	64	71	30	26	22.2																																												
2024	30	9	73	78	30	30	21																																												
시정요구사항	○ 대법원은 진술조력인 제도 사업에 대해 예산집행체계를 정비하고, 수요에 기반한 예산 편성 기준을 마련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0	국민 양형체험 프로그램 사업을 일반수용비에서 일반용역비로 세목조정하여 집행하는 방식 주의 및 개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사법정책연구개선(1143-405)	주의	대법원
		지적사항	○ 국민 양형체험 프로그램 사업은 양형기준에 따른 재판 과정을 국민이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도록 외부 업체를 통한 온라인 기반 영상 콘텐츠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018년부터 일반수용비(210-01목)로 예산이 편성·집행되고 있으나, 2024년 일반용역비(210-14목)로 1억 500만원을 세목조정하여 집행했고 2025년 예산에도 일반수용비만 편성되어 있어 사업의 집행 방식과 예산 비목간 불일치가 발생함		
		시정요구사항	○ 대법원은 국민 양형체험 프로그램과 같은 외주제작 기반 콘텐츠 사업에 대해 일반용역비로 예산을 편성하여 세목조정 없이 계획적이고 투명한 예산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항목 구조와 편성 방식을 개선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1	법원정책연구비의 연례적 이월 최소화 및 원가산정 위탁 기준 명확화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사법정책연구개선(1143-405)							제도개선	대법원																																				
		지적사항	○ 법원정책연구비는 연례적으로 과제 기획 및 계약이 하반기에 집중되는 일정으로 운영되어 다수의 과제가 다음연도 상반기까지 수행기간이 이어져 결과적으로 이월이 반복되는 구조적 문제가 발생함 <최근 3년간 정책연구비 이월 현황> (단위: 백만원, %) <table> <tr> <th>연도</th> <th>세목</th> <th>예산액</th> <th>전년도 이월액</th> <th>이·전용 등</th> <th>예산 현액</th> <th>집행액 (현액대비 집행률)</th> <th>차년도 이월액</th> <th>불용 액</th> </tr> <tr> <td>2022</td> <td>정책연구</td> <td>1,026</td> <td>324</td> <td>—</td> <td>1,320</td> <td>853(64.6)</td> <td>464</td> <td>3</td> </tr> <tr> <td>2023</td> <td>비</td> <td>1,026</td> <td>464</td> <td>—</td> <td>1,490</td> <td>952(63.9)</td> <td>501</td> <td>37</td> </tr> <tr> <td>2024</td> <td>(260-02)</td> <td>885</td> <td>501</td> <td>—</td> <td>1,386</td> <td>1,018(73.4)</td> <td>358</td> <td>10</td> </tr> </table>									연도	세목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현액대비 집행률)	차년도 이월액	불용 액	2022	정책연구	1,026	324	—	1,320	853(64.6)	464	3	2023	비	1,026	464	—	1,490	952(63.9)	501	37	2024	(260-02)	885	501	—	1,386	1,018(73.4)	358	10
			연도	세목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현액대비 집행률)			차년도 이월액	불용 액																																		
			2022	정책연구	1,026	324	—	1,320	853(64.6)			464	3																																		
			2023	비	1,026	464	—	1,490	952(63.9)			501	37																																		
2024	(260-02)	885	501	—	1,386	1,018(73.4)	358	10																																							
○ 반복·유사 과제임에도 관행적으로 외부기관에 원가산정을 위탁하고, 특정 기관에 위탁이 편중되는 등 예산 집행의 비효율과 공정성 저해 우려가 있음																																															
시정요구사항	○ 대법원은 정책연구과제 운영과 관련하여 과제 기획·계약 시점을 조기화해 다음연도 이월을 최소화하고, 반복 과제 및 정형적 단가 구조를 갖는 과제는 내부 기준에 따라 원가를 산정하는 등 위탁 기준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관련 실무지침 또는 내규를 정비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2	국선번호료 지급지연 예방을 위한 집행관리 체계 개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국선번호료 지원사업(1143-409)														
		지적사항	○ 각급 법원 예산 배정 시점과 실제 집행 수요 시기가 불일치하고, 「국선번호에 관한 예규」에 따라 국선번호인 보수 의뢰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보수를 입금해야 하고 미입금시 법원행정처장에 지연사유를 보고해야 함에도 법원행정처의 각급 법원에 대한 관리시스템 부재로 2024년 국선번호료지원 사업에서 총 206억원 규모의 지급지연이 발생했음 <2024년도 국선번호료 분기별 지급 지연액 현황> (단위: 원) <table><thead><tr><th>분기</th><th>지급 지연액</th></tr></thead><tbody><tr><td>1분기</td><td>443,715,840</td></tr><tr><td>2분기</td><td>3,149,643,240</td></tr><tr><td>3분기</td><td>8,918,980,552</td></tr><tr><td>4분기</td><td>8,078,336,632</td></tr><tr><td>합 계</td><td>20,590,676,264</td></tr></tbody></table>			분기	지급 지연액	1분기	443,715,840	2분기	3,149,643,240	3분기	8,918,980,552	4분기	8,078,336,632	합 계	20,590,676,264
		분기	지급 지연액														
1분기	443,715,840																
2분기	3,149,643,240																
3분기	8,918,980,552																
4분기	8,078,336,632																
합 계	20,590,676,264																
시정요구사항	○ 대법원은 국선번호료 수요 집중 시기를 반영해 예산 배정 방식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지급요청 정보를 재판사무시스템에 입력·집계해 실시간으로 집행 상황을 파악하도록 하며, 입금 지연시 관련 정보가 자동 보고되고 일정 기준 초과시 경고하도록 하는 등의 국선번호료 지급 지연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제도개선	대법원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3	기획재정부와 사전 협의 없이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 예산의 내역변경을 통한 집행 주의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차세대전자소송시스템 구축(정보화)(1331-303)	주의	대법원
		지적사항	○ 대법원은 총사업비 관리대상인 차세대전자소송시스템 사업의 시스템 오픈 지연으로 사업기간 변경이 발생하였는데도, 즉시 기획재정부와 사업기간 및 관리용역비 등 연차별 관련 예산 변경을 협의하지 않고, 시스템 오픈 후 집행해야 할 등 사업의 관리용역비 47억 9,200만원을 내역변경을 통하여 타 정보화 사업에서 집행하였음 - 「국가재정법」 제50조제1항에 따르면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의 사업규모·총사업비 및 사업기간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함		
		시정요구사항	○ 대법원은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에 대해서 기획재정부와의 사전 협의 없이 내역변경을 통해 관리용역비를 타 사업에 집행하는 등의 예산 집행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4	형사전자소송 시스템 구축 지연 방지를 위한 철저한 사업 관리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형사전자소송시스템(정보화)(1331-304)	주의	대법원
		지적사항	○ 대법원은 형사전자소송시스템 구축 사업의 일정 지연으로 2024년 예산액 69억 9,100만 원 중 20억 6,500만원을 집행하고(집행률 29.5%) 48억 3,000만원을 이월하는 등 사업관리를 부실하게 수행하였음 - 2023년 시스템 구축 계약 지연에 따른 개발 일정 조정으로 2023년 시스템 구축 일정이 1차 조정되었고, 2024년에도 법무부 KICS 연계기관과의 연계 등 추가 개발기간 확보로 인하여 전체적으로 사업 일정을 2개월을 연장하는 2차 조정이 이루어졌음		
		시정요구사항	○ 대법원은 사업관리를 보다 철저히 수행하여 형사전자소송시스템이 조속히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5	공공요금 및 제세와 임차료의 정확한 비용 추계를 통한 적정한 예산 편성 및 집행률 제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가족등록업무전산화(1332-303)	제도개선	대법원
		지적사항	○ 2024년 동 사업의 ‘공공요금 및 제세(210-02목)’의 집행률은 72%, ‘임차료(210-07목)’의 집행률은 79%로 낮은 편이고, 최근 5년간 해당 비목들의 결산 내역을 보더라도 연례적으로 집행률이 저조함 - 공공요금 및 제세는 당초 예산액 4억 9,500만원 중 3억 6,000만원 집행(집행률 72%) - 임차료는 당초 예산액 27억 9,700만원 중 22억 1,000만원 집행(집행률 79%) ○ 공공요금 및 제세로 집행하는 정보통신망 사용비는 가격변동이 크지 않고, 임차료는 가족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한 장비 계약분 및 노후장비 교체 등의 확정금액을 5년간 나누어 지급하는 것이므로, 해당 비목들의 비용 예측이 가능함에도 집행률이 지속적으로 저조하여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저해함 - 특히 인건비 부족을 사유로 인건비로의 이·전용이 잦은데 이·전용을 미리 고려하여 예산을 실수요보다 과다하게 확보하는 방식으로 악용될 여지가 있음		
		시정요구사항	○ 대법원은 ‘공공요금 및 제세’와 ‘임차료’ 비목의 정확한 비용 추계를 통해 적정한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률을 제고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6	온라인 법고을 고도화 사업의 면밀한 계획 수립으로 사업 일정 준수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법원전자도서관 개발 및 운영(1333-304)	주의	대법원
		지적사항	○ 온라인 법고을 고도화 사업의 부실한 사업계획으로 인하여 과업 범위 조정이 이루어짐에 따라 사업 계약이 연말에 이루어지고 예산 대부분이 이월되는 등 사업 추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		
		시정요구사항	○ 대법원은 향후 정보화시스템 개발 사업을 수행할 시 시스템 구현이 가능한 범위로 과업을 설정하는 등 사전검토를 충실히 수행하여 사업 일정을 준수하고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7	법원의 감사 결과 공개 방안 마련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본부운영지원 (7031-303)	제도개선	대법원
		지적사항	○ 대법원은 2024년 4월부터 11월까지 총 84개 기관을 감사하여 335건의 위반 건수를 적발하였고, 이 중 시정 82건, 권고 4건, 통보 249건을 시행함 ○ 대법원은 회계감사 등을 포함하여 자체 감사에 관한 결과를 비공개하고 있으나, 민감 정보 내지 개인정보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 외에는 최대한 공개하는 것이 사법부의 독립성 및 신뢰 회복 등 장기적인 측면에서 필요한 조치라 할 것임		
		시정요구사항	○ 대법원은 윤리감사관실, 각급 법원 감사과 등 감사 주무부서 간의 협의를 거쳐 사법부의 독립성 내지 자율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감사결과에 대한 공개 범위 및 방법 등을 검토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8	위탁교육 이수자 의무복무기간 불이행시 교육비 환수조치 제도화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사법행정의 효율성 증진(1142-401)	제도개선	대법원
		지적사항	○ 대법원은 소속 법관 및 법원공무원 직무역량 강화를 위해 야간대학원과정, 디지털포렌식 과정 등의 국내 위탁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고 교육을 이수한 자는 일정 기간 법원에서 의무복무를 해야 하며 의무복무 기간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교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도록 하고 있는데, 의무복무 기간을 채우지 않은 명예퇴직자 2명의 교육비 4,800만원이 환수되지 않은 상황임 - 환수 미조치 내역 : KAIST 석사과정 900만원, 디지털포렌식과정 3,900만원		
		시정요구사항	○ 대법원은 법관 및 법원공무원이 국내 위탁교육 훈련비를 지급받았으나 의무복무 기간을 채우지 않고 퇴직하는 경우 퇴직절차와 연계한 훈련비 환수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9	법원보관금 운용수익금 귀속 및 활용에 대한 근거 마련 등 조속한 제도개선 필요	관련사업명	사법서비스진흥기금 - 법원보관금	제도개선	대법원
		지적사항	○ 공탁금의 경우 「공탁법」 제19조에 따라 매년 공탁금운용수익금 중 일부를 사법서비스진흥기금으로 출연하도록 하고 있으나, 법원보관금의 경우 시중은행이 법원보관금을 운용함으로써 추가적인 운용수익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그 운용수익금의 귀속과 활용에 대한 근거가 존재하지 않아 법원보관금 운용수익금을 공적 재원으로서 활용하지 못하고 있음(2024년 말 기준 잔액 2조 3,409억원) ○ 이에 대해 2022. 8. 감사원의 지적이 있었으나, 대법원의 개선조치까지 2년 이상 소요되어 상당한 지연을 보이는 등 대법원의 개선조치에 미흡한 측면이 있음 ※ 대법원은 2024. 11. 공탁금관리위원회에서 법률 및 규칙 개정 등을 통해 법원보관금 출연금 확대 도입을 추진하기로 결정하고 「공탁법」 개정 관련 법무부와의 협의, 출연금 산정모형 관련 연구용역 추진 등을 하고 있음		
		시정요구사항	○ 대법원은 법원보관금 운용수익금 귀속 및 활용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등 개선조치가 더 이상 지연되지 않도록 조속히 법원보관금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20	개인파산·회생 소송구조 사업 예산 적정 수준 계상 필요	관련사업명	사법서비스진흥기금 - 소송구조지원(1161-301)	제도개선	대법원
		지적사항	○ 개인파산·회생 소송구조 사업은 전년대비 4억 3,000만원 증액 편성에도 불구하고 회생사건 지급 건수 및 파산·면책 사건 송달료 단가를 과다하게 계상한 결과 4억 300만원을 불용하여 과거와 유사한 수준으로 집행(집행률 77.0%)되었음 - 회생사건 지급 건수는 과거 구조대상 기준별 지급 현황 분석 등을 통해 사업계획 시 예측할 수 있었을 것이고, 파산·면책사건 송달료 단가도 과거 집행실적 추이를 고려하지 않고 연례적으로 과다계상하였음		
		시정요구사항	○ 대법원은 향후 개인파산·회생 소송구조 사업 계획 시 집행 가능한 적정 수준으로 예산을 계상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21	소년보호사건 등의 전문가진단 및 의견조회 제도 활성화 필요	관련사업명	사범서비스진흥기금 - 소년보호 등 지원사업(1161-304)				제도개선	대법원																																												
		지적사항	○ 내역사업인 ‘소년 등 집행감독 활성화에 따른 전문가진단 등 비용지원’ 사업은 최근 3년간 연례적으로 집행률이 저조하고, 총 사건 수 대비 전문가 진단 등 실시 건수 비율이 2024년 3.4%에 불과하여 제도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제도가 활성화되지 않고 있음 〈소년 등 집행감독 활성화에 따른 전문가진단 등 비용지원 사업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table><tr><th>연도</th><th>예산액(A)</th><th>집행액(B)</th><th>예산집행률(B/A)</th></tr><tr><td>2022</td><td>1,184</td><td>547</td><td>46.2</td></tr><tr><td>2023</td><td>1,184</td><td>538</td><td>45.4</td></tr><tr><td>2024</td><td>867</td><td>601</td><td>69.3</td></tr></table> 〈소년보호사건 등에 대한 전문가진단 등 실시 건수〉 (단위: 건, %) <table><tr><th>구분</th><th>2020</th><th>2021</th><th>2022</th><th>2023</th><th>2024</th></tr><tr><td>총 사건 수(A)</td><td>29,979</td><td>29,644</td><td>32,020</td><td>36,858</td><td>35,034</td></tr><tr><td>전문가진단 등 실시건수(B)</td><td>1,036</td><td>1,772</td><td>1,349</td><td>1,663</td><td>1,184</td></tr><tr><td>총 사건 수 대비 실시건수(B/A)</td><td>3.5</td><td>6.0</td><td>4.2</td><td>4.5</td><td>3.4</td></tr></table>						연도	예산액(A)	집행액(B)	예산집행률(B/A)	2022	1,184	547	46.2	2023	1,184	538	45.4	2024	867	601	69.3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총 사건 수(A)	29,979	29,644	32,020	36,858	35,034	전문가진단 등 실시건수(B)	1,036	1,772	1,349	1,663	1,184	총 사건 수 대비 실시건수(B/A)	3.5	6.0	4.2	4.5	3.4				
		연도	예산액(A)	집행액(B)	예산집행률(B/A)																																															
2022	1,184	547	46.2																																																	
2023	1,184	538	45.4																																																	
2024	867	601	69.3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총 사건 수(A)	29,979	29,644	32,020	36,858	35,034																																															
전문가진단 등 실시건수(B)	1,036	1,772	1,349	1,663	1,184																																															
총 사건 수 대비 실시건수(B/A)	3.5	6.0	4.2	4.5	3.4																																															
시정요구사항	○ 대법원은 소년보호사건 등에서 전문가진단 및 의견조회 실시 비율을 높여 전문가진단 및 의견조회 제도가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22	사법서비스 향상 사업의 연도 말 계약 체결 지양 필요	관련사업명	사법서비스진흥기금 - 사법서비스 향상(1161-306)				제도개선	대법원																																
		지적사항	○ 내역사업인 ‘인신보호제도 운영 등’ 사업에서 대법원은 충분히 예측 가능하고 긴급하지 않은 전산소모품 구입을 위해 2024년 12월 긴급입찰공고로 계약을 체결하고 일반수용비(210-01목) 8,400만원을 이월하였음 ○ 내역사업인 ‘국민참여재판 운영 등’ 사업에서 대법원은 연례적으로 정책연구용역 계약을 하반기에 체결하고 정책연구비(260-02목)을 전액 이월하였는데, 이는 이월을 원칙적으로 금지한 「국가재정법」, 정책연구비의 연내 집행을 강조한 「2024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등의 취지에 반하는 집행행위임 <국민참여재판 운영 등 사업 정책연구비 수행 과제 현황> (단위: 백만원) <table><tr><th>연도</th><th>계획액</th><th>계약액</th><th>집행액</th><th>이월액</th><th>연구용역 계약기간</th></tr><tr><td>2021</td><td>30</td><td>29</td><td>—</td><td>29</td><td>2021.12.~2022.9.</td></tr><tr><td>2022</td><td>25</td><td>24</td><td>—</td><td>24</td><td>2022.8.~2023.2.</td></tr><tr><td>2023</td><td>25</td><td>24</td><td>—</td><td>24</td><td>2023.12.~2024.6.</td></tr><tr><td>2024</td><td>25</td><td>25</td><td>—</td><td>25</td><td>2024.12.~2025.6.</td></tr></table>						연도	계획액	계약액	집행액	이월액	연구용역 계약기간	2021	30	29	—	29	2021.12.~2022.9.	2022	25	24	—	24	2022.8.~2023.2.	2023	25	24	—	24	2023.12.~2024.6.	2024	25	25	—	25	2024.12.~2025.6.		
		연도	계획액	계약액	집행액	이월액			연구용역 계약기간																															
2021	30	29	—	29	2021.12.~2022.9.																																			
2022	25	24	—	24	2022.8.~2023.2.																																			
2023	25	24	—	24	2023.12.~2024.6.																																			
2024	25	25	—	25	2024.12.~2025.6.																																			
시정요구사항	○ 대법원은 사법서비스 향상 사업의 연도 말 계약 체결 및 예산 이월을 지양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3. 부대의견

- 대법원은 2023년 회계연도 결산에서 집행지침에 위반하여 복리후생비를 집행한 것에 대한 주의 조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24년에도 집행지침을 위반하여 복리후생비를 집행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경위를 국회에 보고한다.